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2017. 09.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분야별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기획 및 편집위원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 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여영준 (총무담당관)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박규찬 (정치의회팀장) 심정희 (법제사법팀장) 유웅조 (외교안보팀장) 이상팔 (안전행정팀장) 정지은 (재정경제팀장)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 김봉주 (산업자원팀장) 유인규 (국토해양팀장) 유의정 (교육문화팀장)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최준영 (환경노동팀장 직무대리)
편집실무	김유정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김안나 (정치의회팀 행정실무원) 방우리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원)

발 간 사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국정 운영의 잘못을 밝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명문화한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며, 국회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31건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1~2건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기존 보고서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건수를 확대하고, 보고서 발간 시기도 앞당기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약 29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였으며,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 시정 및 처리결과와 점검 및 평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국회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알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 국회가 채택한 시정요구서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평가보고서의 발간 기획·원고작성·편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일부 정부 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춰 정부 부처,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지 및 목차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	국회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만, 본문 내용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또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의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에 따른 정부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각 주제 하단에 소관부처의 담당 팀 및 주제를 작성한 조사관의 연락처를 기술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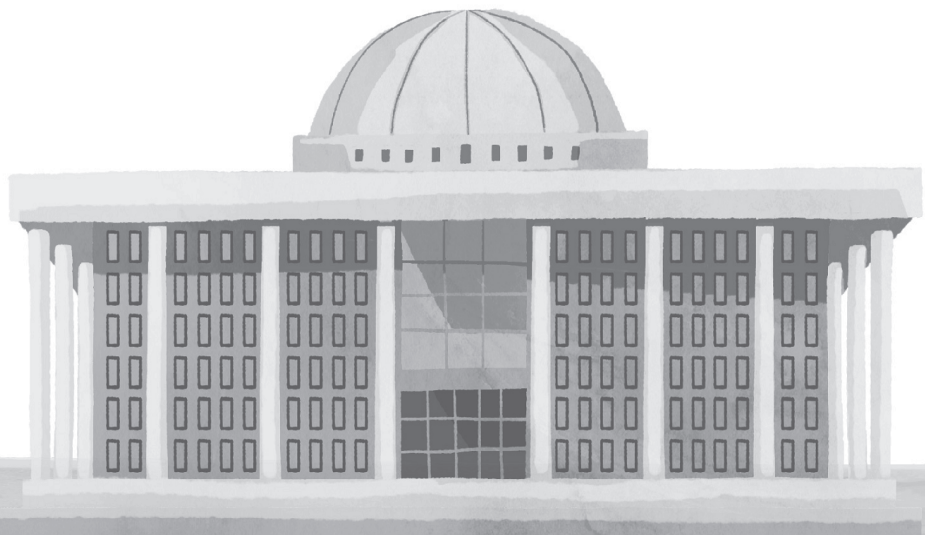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각 권별 상임위원회 구분 현황

구분	상임위원회
평가보고서 I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평가보고서 II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평가보고서 III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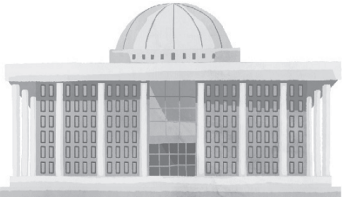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목 차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목 차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3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7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13
검사의 외부파견 축소	16
제주도 무사증 제도 관련 범죄예방 대책	19
난민심사 전담인력 확보	22
기결수 변호인 접견제도 남용문제	24
교정시설 및 소년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확충	2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담당 변호사 총원	29

▶ 대법원

성폭력범죄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강화	33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37
미성년자 입양제도 정비	40
법원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	42
조정권고 후 소취하 제도 개선	45
사법신뢰도 개선방안 강구	48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	51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대책	53

▶▶ 감사원

감사결과와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57
전문분야의 감사 전문인력 확보·양성	59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미제 및 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개선	61
--------------------------------	----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67
군 옴부즈만 제도	70

▶▶ 병무청

입영대상자 심리검사 강화	73
---------------------	----

▶▶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77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외부인사 위촉	80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87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90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	93
대북제재 실효성 검토	97
공공외교 강화	100
재외국민보호 강화 방안	103

외교부 직원 성관련 비위행위 근절	107
--------------------------	-----

▶ 통일부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부정책의 차별화	110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개선	112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협상의 투 트랙 전략	116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상	117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기업 피해 보상	120
통일준비위원회의 국정감사 처리결과	123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의 운영개선	131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방안	133
부처별 PC영상회의 개선방안	135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하향 방안	138
개인정보 비식별화 입법화	140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142
도로명주소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144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47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개선	149
접경지역 발전대책	15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157
지방회계직공무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 강화	160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163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운영 개선	1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개선 방안 모색	169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선	172
담배세수 구조 재검토	175
담배제조사의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 대응	178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해결 대책	18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18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공정성 확보	187
자원봉사보험제도 개선	190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 중립 대책 마련	193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	196
활성단층 조사 및 활성단층 지도 제작	199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강화	201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방안 검토	204
3개 통신망간 혼·간섭문제 대책	207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내실화	209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211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213

»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	216
공무원의 전문성/생산성 강화	219
퇴직예정공무원의 지원강화	221
공무원 해외출장 사후관리 개선	224

» 경찰청

해외 공관 경찰 주재관 배치	227
경찰관 정신질환 치료 관련	230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232
전방 신호등 설치 관련	235

» 소방청

소방관 공기호흡기 관리 개선	23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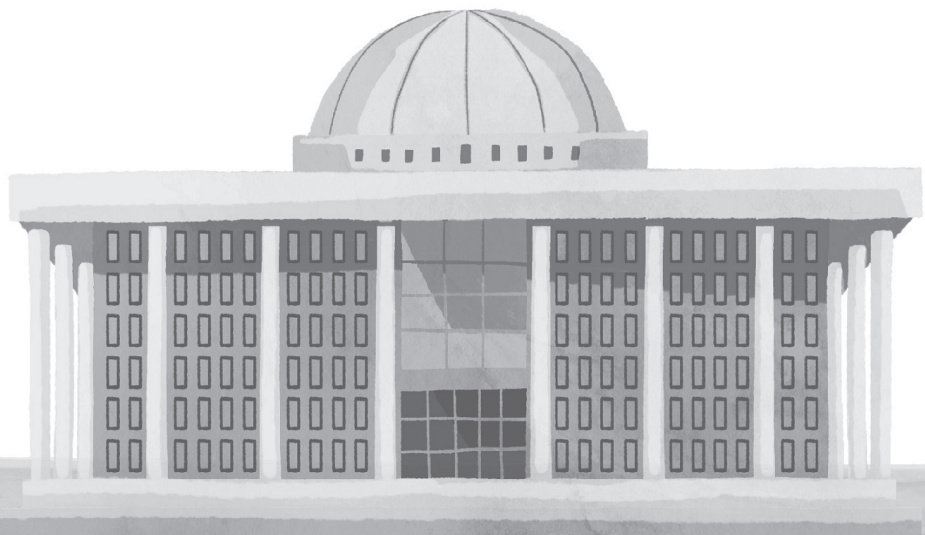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240
중앙선거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효성 제고	242
거소투표 부정행위 억제방안	244
후보자 대상 선거관련 교육 확대 및 강화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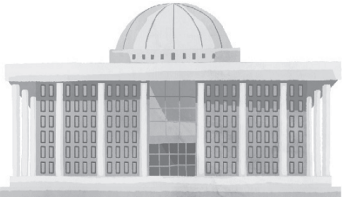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국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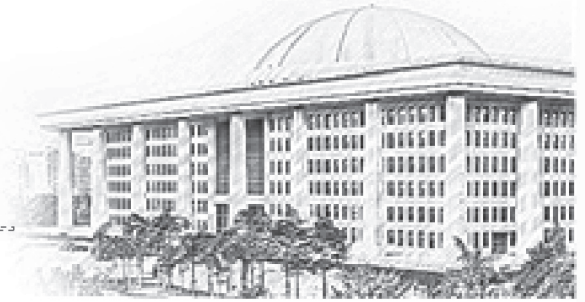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에 대하여 인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비중 강화와 효력 제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비중을 강화하고 그 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권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일환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함) 제25조를 개정한 바 있음
 -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 통지 등 의무화
 -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실무 협의, 권고 이행계획 통지 촉구 및 불수용에 대한 언론공표 등을 활용하여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헌법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헌법 개정 시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또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권고 사후관리 강화, 불수용 이유 언론 공표 등을 통해 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인권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진정사건 권고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보고(2017.2.28.)
- 진정사건 권고수용 제고를 위한 보완 시행(2017.3.3.)
- 새정부의 인권 업무와 관련하여 권고수용 현황과 국가기관 등의 불수용 사유 등 자료 공유 및 권고 수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협의 진행(2017.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인권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인권위는 2016년 국회운영위원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권고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과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한 권고 이행실태 점검, 정책관계자협의회 활용, 기관 간 상설 논의 채널 구축,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권위의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권고 관련 불수용 이유의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음



Ⅲ 불수용 이유의 유형과 사례 Ⅲ

불수용 이유의 유형	사 례
인정사실에 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업체의 질병 보균자에 대한 채용과정의 차별 -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 - 사기업체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권고기관의 인권 이해 부족, 기관 운영 목적 우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사관학교 1학년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제한 - 경찰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성선발 비율을 제한 - 대학교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신앙 요구로 인한 차별
피권고기관의 기본정책과 대립, 예산부족 및 입법상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도적 체류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구금시설의 고위험군 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배우자의 계부모 배제 건
관련 법령의 이해나 해석의 상충, 현실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수사과정의 보호장비 해제 의무 위반 등 -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 시 형집행정 원본 미제시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이행계획을 실제 이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검토중으로 사실상 불수용 상태로 방치 - 피권고기관이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법원에 다툼을 제기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 그 밖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에는 사인(사적 개인과 사기업, 법인 등)과 달리 인권 보호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부여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의 권고 불수용 문제, 구제조치가 피해자 개인에게 한정되는 민원성 사안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이 큰 권고를 불수용하는 문제, 그리고 통보기간 미준수의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음
- 실제로 통보기간의 경우 2012년 인권위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되어 피권고기관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진정사건의 경우 90일 이내 회신율은 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Ⅲ 진정사건의 피권고기관 미회신 현황 Ⅲ

구 분	기관수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90일 이내	90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2016	408	144	24	210	30	72.7
2015	326	235	82	0	9	72.1



구 분	기관수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90일 이내	90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2014	271	199	72	0	0	73.4
2013	341	251	89	0	1	73.6

주 : 2016.12.31. 현재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 한편, 단순 권고수용현황 관리 외에 피권고기관과 협의, 실무적 채널구성과 유지, 불수용의 경우 추가 또는 보완 점검 등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권고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조안자로서의 인권위 역할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피권고기관의 자체적인 개선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해당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의 평가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권고를 받은 후 일정 기한 이내에 권고 이행 여부를 회신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수용하는 경우에 이를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로 평가하여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인권위법에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위법에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권고나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인권위법 제25조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제44조의 구제조치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인권위가 확인·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인권위 스스로도 정책관계자협의회 활용, 기관 간 상설 논의 채널 구축,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권고 수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규범	02) 788-4541
관련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손두진	02) 2125-9901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인권위원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권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2016.11.)



-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 조사 절차, 현황 청취
- 조사 및 생활 시설 견학
-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노력 당부 등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방문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적응 교육, 정착지원 제도 등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교육 및 생활 시설 견학
- 정책검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인권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실태 현장 확인(2016.11.29.)**
 -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등 현장 방문
 -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 조사 절차, 현황 청취
 - 조사 및 생활 시설 견학
 -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노력 당부 등
-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차별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2017.1.31.)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2017.3.14.)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2017.5.31.)
-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7.4.20.)**
 - 통일부장관에게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도록 실무편람 정비 등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센터의 취업상담과정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등 권고
-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현황과 개선방안
 -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추진방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인권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인권위는 2016년 국회운영위원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인권실태 현장 확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사항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권고·의견표명 등을 추진하면서 선행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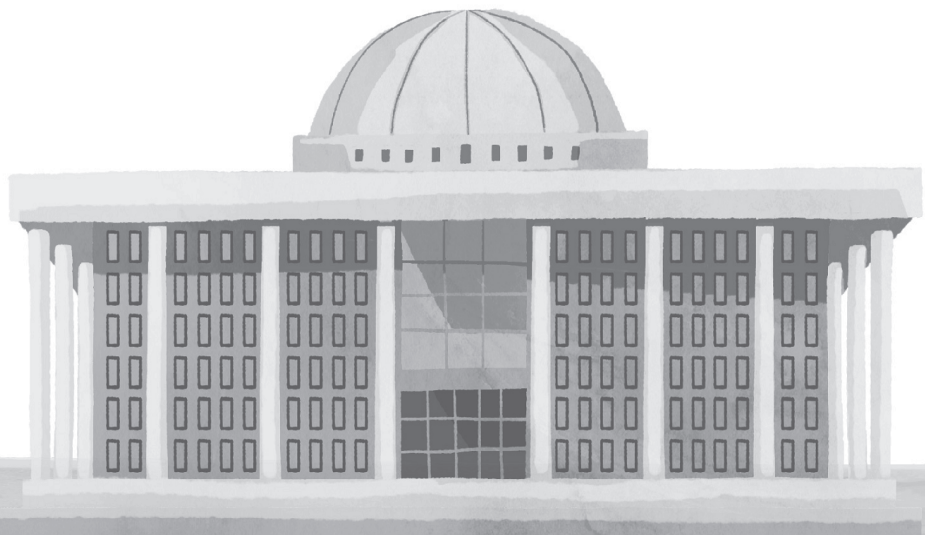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규범	02) 788-4541
관련 부처	국기인문위원회	정책교육국	인문정책과	이서준	02) 2125-9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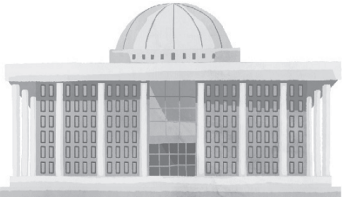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법제사법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법무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전고등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것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각 고등검찰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음(대전고등검찰청 등)
 - 산하 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고등검찰청도 적극 활용을 지도하고 있음(광주고등검찰청 등)



-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사건 처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서울고등검찰청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는지 여부(확인 불가)
 - 위원의 인원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위원의 성별·연령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미이행)
-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처분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불가)
 - 심의결과와 처분결과가 상이한 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검찰시민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되어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함.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검사는 공소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
-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횟수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상반기 동안 부산고검을 제외한 4개 고검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음



청 별	2014		2015		2016		2017. 6.	
	회의개최	심의건수	회의개최	심의건수	회의개최	심의건수	회의개최	심의건수
서울고검	0	0	1	1	0	0	0	0
대전고검	0	0	1	2	1	2	0	0
대구고검	0	0	0	0	1	3	0	0
부산고검	0	0	3	4	41	45	15	34
광주고검	1	1	1	1	1	1	0	0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횟수도 2016년 국정감사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원칙적으로 월2회 정례 개최하여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하여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밝힌 청주지검¹⁾을 포함하여 속초지청, 정읍지청에 서는 2017년 상반기 동안 검찰시민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음

연도	운영 지검 및 지청 수	연 평균 개최횟수	연 평균 심의건수
2014	58	11.3회	23.2건
2015	58	12.4회	26.2건
2016	58	13.9회	29.6건
2017. 6.	59	14.7회	32.7건

- 이와 같이 2016년 국정감사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에 큰 개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에 적극적이었던 검찰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하 통계는 2017년 상반기 기준)
 - 고등검찰청 : 부산고검(15회 개최, 34건 심의)
 - 지방검찰청 : 대전지검(23회 개최, 46건 심의), 서울중앙지검(22회 개최, 52건 심의), 광주지검(20회 개최, 37건 심의)
 - 지청 : 월평균 2회 이상 개최한 지청으로는 평택지청(12회 개최, 25건 심의) 및 안산지청(12회 개최, 77건 심의)
- 대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처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음

1) 대한민국 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법무부 소관)』, 2017. 2, p.15.



- 따라서 각 검찰청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처분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대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인원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검찰시민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개선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백상준	02) 788-4544
관련 부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	02) 2110-3551

■ 감사의 외부파견 축소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현직 감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인원을 최소화하라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 정부 들어 외부기관 파견 감사를 상당 수 감축하였다고 밝힘
 - 2016년 8월 외부기관 파견 감사는 68명으로 2013년 2월 71명에서 3명을 감축함
 - 정부 내에서 법률전문가인 감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외부 기관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여 감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외부 파견기관에 대한 업무내용 및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사 파견 유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부기관 파견 검사 감축 수행 여부
 - 작년에 비하여 2명이 감축됨(이행)
- 법무부 배정인원 축소 수행 여부
 - 배정 인원 축소에 대한 계획 및 실행 없음(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감축기관을 지정하고 총 파견인원을 2명 감축하였으므로 외부기관 파견 인원을 자제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2월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감축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국무조정실, 감사원이 지정됨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검사가 파견되지 않았고, 통일부, 사법연수원, 국무조정실, 감사원에는 파견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보임

구분	파견기관	인원	파견목적
중앙부처 및 위원회	식약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통일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22	법률자문, 부처 내 법령장비 및 법안심사, 특사경 교육, 고발 검토 등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6	법률자문 및 특사경 교육 및 감독
사법부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11	위헌법률심판 사건 연구·검토, 검찰실무 강의
독립기구	국가정보원, 감사원	7	법률자문 및 법안심사
공공 기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조윤리협의회, 형사정책연구원, 예금보험공사	7	법률자문 및 검토, 형사정책 연구



구분	파견기관	인원	파견목적
국회	국회	1	법률자문
주재국	주미국, 주일본, 주중국, 주독일, 주네덜란드대사관, 주LA총영사관	6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기구	주유엔, 주제네바대표부, UNODC(아태, 비엔나), UN상거래법위원회, 국제개발은행	6	형사사법 공조 지원, 국제상거래 및 국제 자금세탁 관련 법률자문

- 감사의 법무부 배정인원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및 추진계획은 밝힌바 없음. 감사의 법무부 배정을 자제하라는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 파견 검사인원은 70명~71명으로 비슷한 수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검찰관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대변인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장관정책보좌관에 파견되어 법무부 전반에 배치되고 있음
- 법무부의 실·국 과장직과 대부분의 핵심실무가 파견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3. 개선방안

- 외부기관으로 감사가 파견되는 주요 목적인 법률자문 및 법안심사 업무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무부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감사의 겸임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이 필요해 보임
- 단계적으로 법무부의 검사 정원을 축소하고 외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혜림	02) 788-4542
관련 부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	02) 2110-4204



■ 제주도 무사증 제도 관련 범죄예방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제주지검)에 대하여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외국례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법무부(제주지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외국인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 수사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임
 -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국정지, 중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라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 중임
 - 2017년 1월 제주지검 주최로 ‘출입국 및 외국인범죄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임
 - 2017년 2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계도 및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등 외국인범죄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 수사력 강화방안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외사 전담 검사를 1명에서 2명에서 증원 강력범죄의 경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행(이행)
- 출입국 및 외국인범죄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 개최
 - 「제주 출입국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이행)
 - 합동 계도 및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진행함(이행)



■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범죄 대책 마련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 강화 및 불법체류자 수시 합동단속 계획(계획 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사 전담 검사를 1명 더 증원하였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제주지검은 유관기관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국사범자진출국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출국시 향후 입국규제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침을 홍보하고 불법체류자 자진해소를 유도함
 - 2017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국사범 유관기관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각 유관기관 상호간 인력·장비 등 각종 지원을 지원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함
- 하지만,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평가는 2017년 출입국사범 유관기관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 결과만으로 알 수는 없고 매해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의 수와 외국인 범죄 증감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자진출국자는 총 2,144명으로 전년 동기 출국자 수의 약 3.4배에 이룸
 -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강제 퇴거자는 총 669명으로 전년 동기 강제 퇴거자의 수의 약 1.7배에 이룸
 - 계도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과 강제퇴거자의 수가 작년(2016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매해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수와 외국인 범죄의 증감 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 출입국사범 유관기관들은 고위험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국정감사 시정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내의 집중단속 및 계도만으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내륙으로 무단 입국하는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짐

3. 개선방안

- 항공 및 항만 시설을 통한 내륙 입국을 대비하여 관계 유관기관들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내륙 경찰청과도 연계하여 내륙 밀입국자 리스트 작성 및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시민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공유하고 외국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에게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독일은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시민, 경찰이 협력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안전파트너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시민순찰 및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외국인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혜림	02) 788-4542
관련 부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 2110-3006 02) 2110-4039



■ 난민심사 전담인력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난민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함
 - 2012년 1,143명에서 2016년 7,542명으로 660%로 증가함
 -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2016년 5월에 4명을 증원하였고 2017년 8월에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난민심사 전담 인력증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난민심사 전담인력의 증원
 - 전담인력을 10명 증원함(이행)
-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심사기법 및 인권 교육 강화(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난민전담인력 확충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난민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2016년 5월, 4명이 증원되고 2017년 8월, 10명이 증원되어 현재 난민심사 전담인력이 23명임
 - 직제상 전담인력 이외에 1차심사 TF 10명 및 다른 출입국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난민업무 담당자가 8명이 있음
 - 2015년 이후 난민전담인력이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현재 난민심사에 관여하는 인력은 총 41명인 것으로 보임
- 난민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난민전담인력의 증원 뿐만 아니라, 난민전담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 난민심사 기간, 난민 심사 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 2회정도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난민심사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난민심사 결정건수가 전년대비 150%(2015년 2,134건에서 2016년 5,394건으로) 개선되었으나, 난민신청 건수가 2015년 5,711건에서 2016년 7,542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함

3. 개선방안

- 난민심사제도에서 각 심사단계간의 정보 공유 및 관련 기관들의 연계가 필요함
 -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1차 난민심사관에 의한 심사, 2차 난민위원회, 3차 법원의 행정심판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짐
 - 각 심사단계간의 정보 공유 및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부족하여 유사한 내용의 심사가 각 단계별로 반복되어 난민심사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짐
- 난민심사 인원 및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 2013년부터 난민심사 업무가 이루어져, 난민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이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시리아,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의 난민이 신청함에 따라 각 국가의 언어로 표기된 신청서를 마련하고 난민 대상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혜림	02) 788-4542
관련 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난민과	-	02) 2101-4162

■ 기결수 변호인 접견제도 남용문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하여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제도의 남용 문제를 개선 조치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송수행이 아닌 심부름이나 회사경영대리, 외부와의 연락 등 수사나 재판준비와 무관한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입법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2월 입법예고, 5월 법제처 심사의뢰, 6월 국무회의, 8월 국회제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변호인 접견권 남용사례를 막기 위한 법무부의 입법추진 여부

-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179)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임(대안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법무부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은 의원발의 법안의 형식으로 대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미결수용자의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외에 정당한 접견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중지하거나 접견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법무부는 입법 추진 중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 발의로 인해 독자적인 입법 추진은 하지 않음

○ 기결수 수용자 접견은 추가적인 형사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의 접견이 가능해짐. 따라서 넓은 의미의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라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변호인 접견교통권도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나 수용자 등의 방어권 행사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필수적인 권리임을 고려해서 신중히 입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교통권도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²⁾ 특정인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2) 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마341 결정



미결수용자등의 변호인 접견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필요해 보임

- 그러나 지나치게 이를 제한하거나 교정기관의 재량 범위가 넓을 경우 오히려 수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한 자율적인 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혜림	02) 788-4542
관련 부처	법무부	교정과	교정기획과		02) 2110-3378

■ 교정시설 및 소년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확충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소년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서 2016년 11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시기별로 추진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함
- 단계별·시기별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함



- 의무관 인력풀 관리, 의무관 수시채용 확대, 의료정보사이트 채용 홍보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활성화 및 여성의사·일반의 적극 채용

□ 법무부는 전국 11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중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관이 4개 뿐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추가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전국 교정시설의 의무관 증원 여부
 - 작년 대비 9명이 증원되어 현재 91명이 배치되어 있음(이행 중)
- 의무관의 임기제 계약직 채용과 정년보장이 되는 경력자 채용 확대
 - 의무관의 임기제 계약직 채용, 경력자 채용 진행(이행 중)
 - 일반의, 여성의사의 채용 확대(미이행)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관 확대 여부
 - 4개 기관으로 유지(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전국 교정시설의 의무관이 작년 대비 9명이 증원되어 교정시설 의무관의 채용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7월 기준으로 82명에서 2017년 7월 기준으로 91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17년 8월 임용예정인 의무관이 3명(상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원주교도소)이고 9월 임용예정인 의무관이 1명임(안동교도소)
 - 작년보다 증원되었으나 전국 교정기관의 정원인 109명에는 여전히 미달인 상태임
- 여성의사, 일반의 채용은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여성의사 비율이 2.2%이고 일반의 비율은 27.4%임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전문의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조치는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국정감사에서 11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관이 4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음. 2017년 7월 기준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 기관은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대전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여전히 4개임

연번	소년원명	의사 정원	의사 현원	정신과 전문의 현황	비고
1	서울소년원	1	1	0	
2	부산소년원	2	1	1	결원1
3	대구소년원	2	2	1	
4	광주소년원	1	1	0	
5	전주소년원	1	1	0	
6	대전소년원	3	2	2	결원1
7	청주소년원	1	1	0	
8	안양소년원	1	1	0	
9	춘천소년원	1	1	0	
10	제주소년원	1	1	0	
1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2	1	
계		16	14	5	

- 4개 기관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들은 모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음
 - 부산소년원: 2013년 채용, 대구소년원: 2015년 채용, 대전소년원: 2016년 채용,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011년 채용
-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사는 총 14명으로 의사 정원(16명)에서 결원이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신과 전문의는 총 5명임
- 2017년 7월 대전소년원은 인사혁신처 채용공고를 통해 1명 추가 채용이 진행 중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혜림	02) 788-4542
관련 부처	법무부	교정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기획과 범죄예방기획과	-	02) 2110-3471 02) 2110-357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담당 변호사 총원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담당 인원의 확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소송대리 가능 인원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한변호사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소송대리 가능한 2·3년차 공익법무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법률구조 수요 증가와 고품질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 정원 확대 및 예산 지원에 대한 협의를 기재부와 계속 진행할 예정임
 - '17. 2. 변호사 6명 신규 채용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서비스 제공 노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 전문성 강화교육(이행 중)
-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다각적 협력(이행 중)
- 소송대리 가능한 2·3년차 공익법무관 확보(이행 중)
- **소속 변호사 정원 확대 여부**
 - 소속 변호사 정원 확대 여부(미이행)
 - 2017년 변호사 6인 신규채용(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 2회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굴·전파, 매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속 변호사의 발제·토론, 전문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의무연수 등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소속 변호사 정원 확대는 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정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0명으로 정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정원 및 현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원	91	100	100	100	100
현원	79	90	96	98	96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17.07.20.

- 2017. 2. 1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인의 신규 소속 변호사 채용
- 다만, 소송담당 공익법무관의 경우 2016년도 12월 31일 124명(당시 공익법무관은 총 175명이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변호사 51명이 자격 취득 6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소송을 담당할 수 없었음)이었으나 2017년 7월 1일 현재 147명으로 23명 증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력을 위한 이행도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래 표에 의하면 법률구조와 관련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력은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법률구조위원 법률구조실적 ▮

(단위: 건)

연도	구분 구조결정	종결			진행중 (제소준비중 포함)
		제소전종결	제소후종결	소계	
2012	69	0	66	66	48
2013	49	0	65	65	33
2014	56	0	55	55	33
2015	54	0	41	41	46
2016	39	0	48	48	39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17.07.20.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구조위원회에게 법률구조를 맡기는 건수는 2012년 69건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으나, 2016년에는 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3. 개선방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소속 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외부의 변호사인 법률구조위원회에 법률구조를 위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건을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외부의 법률구조위원회에 법률구조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1) 이익의 충돌로 인하여 의뢰자가 신청한 사건을 공단에서 직접 처



리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2) 지부 등의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모두 사고가 있어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법률구조위원 중에서 수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한 현황은 아래 표를 볼 때 매년 평균 150,646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정원 100명으로 계산할 때 변호사 1인이 년 1,506.5건, 월 125.5건, 주 31.4건을 처리하는 셈이 됨

Ⅱ 최근 5년간 소송대리 현황 Ⅱ

(단위: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104	2015	2016	5년 평균
민사 등	117,063	128,241	134,683	137,806	140,797	131,718
형사	13,611	16,257	21,546	21,759	21,468	18,928
합계	130,674	144,498	156,229	159,565	162,265	150,646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17.07.20.

-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호사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변호사가 각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의 피해로 귀결될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 등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송담당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이재일	02) 788-4546
관련 부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02) 2110-3263

대법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성폭력범죄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신상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전담재판부 전문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성범죄 사건의 최근 법령개정을 모두 반영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2014. 2. 발간·배포, 성범죄사건 관련 법률 및 업무처리 기준, 재판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성범죄재판참여매뉴얼을 2015. 12. 발간·배포하였음
 - 2010년부터 매년 재판부가 구성된 직후인 3월경 성폭력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를 실시하여, 피해자보호방안,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부수처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관련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즉시 전산망을 통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 연수 등을 통해 법관들이 법률개정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성범죄 관련 재판장 회의나 법관 연수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범죄 사건 처리 매뉴얼 발간·배포 여부
 - 성범죄재판실무편람 발간(이행)
 - 성범죄재판참여매뉴얼(이행)
- 성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 개최 여부
 - 성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 개최(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2014. 2월에, 성범죄재판참여매뉴얼을 2015. 12월에 발간·배포하였으나, 성폭력 관련 근거법령은 잦은 개정이 있다는 점에서 적기에 개정법령이 실무편람과 참여매뉴얼에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매년 3월 대법원은 정기인사 후 구성된 성범죄 전담재판부를 대상으로 법관 연수를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재판실무편람·성범죄재판참여



매뉴얼 발간, 연 1회 성범죄 전담재판부 법관 연수만 실시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사회적 편견에 의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 대한 합의 중용, 보복 위협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수사·재판 담당자 들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같은 법 제50조제2항). 그리고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제2조제1항은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17. 5. 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2013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211개 성폭력범죄 사건 재판을 동행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행횟수 334회에서 30회의 피해자 신상노출이 있었다고 함¹⁾

▣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빈도 ▣

연도	사건 수(건)	동행횟수(회)	피해자신상노출(회)
2013-2014	29	81	5
2015	139	184	21
2016. 8월말	43	69	4
총계	211	334	30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2017. 5. 4.

▣ 재판 중 인적사항 노출의 예 ▣

사례	일시	법원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
1	2015.03.26.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피해자 증인 요청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무
2	2015.04.17.	서울서부지방법원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이름을 여러 번 노출	피고인변호사	무
3	2015.04.28.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름 노출	피고인변호사 판사 검사	무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2017. 5. 4.



사례	일시	법원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
4	2015.05.20.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증인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사가 제지. 그러나 이후 진술 및 변론에서 계속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판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음	피고인변호사	무
5	2015.06.18.	서울고등법원	이름 노출	판사 피고인변호사	무
6	2016.06.28.	서울고등법원	피해자 부모·변호사에게 발언기회 주는 등 적극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실명 거론	판사	무
7	2016.07.04.	광주지방법원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언급됨 지역사회 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	피고인변호사	확인 불가

- ▶ 대체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대신 ‘피해자’ 또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8월 기준)까지 이루어진 334회의 재판 동행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30회(11.1%) 노출됨
- ▶ 주소·성명·연령·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개인이 드러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에 대한 합의 중용, 보복 위험이 높아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사례 4). 사례 7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실명·근무지 등 정보가 지역사회에 노출 될 우려가 더 컸음
- ▶ 피고인변호사의 비율이 높지만 판사·검사도 있음. 판사는 재판정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증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이를 경고하고 제지할 의무가 있음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2017. 5. 4.

-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개별 사건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이재일	02) 788-4546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 배제 철회, 미제 증가 등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피고인 신청주의 한계로 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
 -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 적극 발굴 및 실시 독려, 국민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 등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 및 참여 유도,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 개선 등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시행 또는 강구하고 있음
 - 향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살인 등 중대 범죄 또는 사형·무기 등 중형대상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여부

- 국민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이행)
-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 개선
-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등 법률 개정(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진행기법 개선과 관련된 이행사항은 확인이 불가함
- 대법원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의 형사사법코너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영상 및 인쇄 홍보를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홍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입법 개선이 필요함

□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회부
 - 현행법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함
 - 그러나 살인·방화·강도 등 강력범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가능한 범



- 죄, 불특정다수에 대한 연쇄범죄 등 중범죄 또는 중형선고가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 중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명확성 증진 필요
- 이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여부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形骸化)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현저한 절차지연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여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예시 사항을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강화
- 배심원 평결이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유·무죄 평결을 하도록 하고(현행 다수결), 판사는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배심원 평결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현행법상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는 것은 재량사항이지만, 배심원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판결문에 배심원의 의견을 남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이재일	02) 788-4546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 미성년자 입양제도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미성년자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구 입양아 뇌사사건 및 포천 입양아 살해사건 사례에 비추어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서 입양허가 시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양육환경 조사와 판단에 대한 상세한 내부 기준 등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대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양부모가 되지 않도록 심사함과 동시에 입양아동이 제 때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입양허가 재판의 심리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음
 - 입양사건에서의 부모교육 내실화 및 양부모 심리평가를 위하여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양특례법사건 처리 매뉴얼』 및 『입양조사절차』를 법원 내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여 입양사건의 심리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입양조사관 제도 신설, 입양허가사건의 관할 집중(가정법원 본원에서만 1심을 담당하도록 함), 임시인도절차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양허가사건의 제도적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법원은 입양 실태 및 입양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입양절차 제도들의 정착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입양사건에서의 양부모 심리평가 및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16. 12. 29. 「가사소송규칙」을 개정(대법원규칙 제2704호, 2017. 2. 1. 시행)하여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62조),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9)
- 『입양특례법사건 처리 매뉴얼』 및 『입양조사절차』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여 입양사건의 심리 충실화를 도모함
- 입양조사관 제도 신설, 입양허가사건의 관할 집중(가정법원 본원에서만 1심을 담당하도록 함), 임시인도절차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양허가사건의 제도적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미성년자 입양제도에서는 어떤 아동이 입양의 대상이 되느냐(아동의 입양 적격)와 어떠한 사람이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느냐(입양부모의 자격 및 양육능력)를 전문적인 판단에 기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임
-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 촉탁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입양부모의 자격 및 양육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심리검사와 교육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입양특례법사건 처리 매뉴얼』 및 『입양조사절차』를 공유하여 입양사건의 심리 충실화를 도모한 조치는 미성년자 입양의 최종적인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입양조사관 제도 신설, 입양허가사건의 관할 집중, 임시인도절차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역시 입양부모의 자격 및 양육능력의 철저한 심사와 법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미성년자 입양은 「입양특례법」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조치사항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입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지영	02) 788-4547
관련 부처	대법원	-	-	-	-

■ 법원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법원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소속 조정위원 현황을 보면 여성 조정 위원 비율이 적고 연령대도 50대 이상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조정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젊은 변호사를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향후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성 조정위원 후보자를 발굴하겠음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재DB를 활용하여 여성 조정위원 후보자를 발굴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재DB 활용 여부(미이행)
 - 여성인재DB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성 조정위원 후보자를 발굴하였는지 여부(이행 중)
 - 여성단체 의견 청취 또는 여성단체 전·현직 구성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함
 - 여성 조정위원 비율 소폭 상승(17.8%→18.2%)
- 50대 미만의 조정위원 비율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이행 중)
 - 50대 미만의 조정위원 비율 소폭 상승(13.4%→16.6%)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50대 미만의 조정위원 구성 비율은 2016년도 국정감사 이전에 비해 3.2%p 상승하였음(13.4%→16.6%)
 - 그러나 연령대 다양화의 측면에서는 현 16.6%의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분	기준 연월	조정 위원 수	연령별(비율)					
			50세 미만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 60세 미만	60세 ~ 70세 미만	70세 이상
고등법원	2016. 9.	442	65(14.7%)	3(0.7%)	62(14.0%)	187(42.3%)	148(33.5%)	42(9.5%)
	2017. 6.	446	72(16.1%)	4(0.9%)	68(15.2%)	189(42.4%)	147(33.0%)	38(8.5%)
지방법원 및 지원	2016. 9.	6012	798(13.2%)	87(1.4%)	711(11.8%)	2287(38.0%)	2169(36.1%)	758(12.6%)
	2017. 6.	6051	1007(16.7%)	119(2.0%)	888(14.7%)	2133(35.3%)	2188(36.2%)	723(11.9%)
계	2016. 9.	6454	863(13.4%)	90(1.4%)	773(12.0%)	2474(38.3%)	2317(35.9%)	800(12.4%)
	2017. 6.	6497	1079(16.6%)	123(1.9%)	956(14.7%)	2322(35.7%)	2335(35.9%)	761(11.7%)

- 법원은 2017년 조정위원 선정시 여성단체 등²⁾의 전·현직 임원 및 구성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조정위원 선정 시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조정위원 중 여성위원 구성 비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0.4%p 상승에 그쳐(17.8%→18.2%) 그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 조정위원 비율 증가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분	기준 연월	조정위원 수	성별(비율)	
			남성	여성
고등법원	2016. 9.	442	388(87.8%)	54(12.2%)
	2017. 6.	446	389(87.2%)	57(12.8%)
지방법원 및 지원	2016. 9.	6012	4918(81.8%)	1094(18.2%)
	2017. 6.	6051	4926(81.4%)	1125(18.6%)
계	2016. 9.	6454	5308(82.2%)	1148(17.8%)
	2017. 6.	6497	5317(81.8%)	1182(18.2%)

- 법원은 현재까지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재DB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향후 조정위원 선정에 여성인재DB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예: 전북여성일자리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군산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온가족상담연구소, 전주YWCA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백상준	02) 788-4544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 **조정권고 후 소취하 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조정권고 후 소취하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에 대해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정권고(재판부가 피고인 행정청에게 해당 처분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원고에게는 변경처분이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는 실무상 확립된 제도로서 행정쟁송의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공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정권고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정권고에 관한 근거규정은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재 법무부 주도의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작업이 답보 상태이고, 정부가 2013. 3.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도 '조정권고의 근거'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법률 차원의 근거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임
 - 대법원규칙에 조정권고의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칙 제·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조정권고의 법제화 추진과 아울러 실무상 조정권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정권고 활용 여부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당사자가 조정권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조정권고에 관하여 법령상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규정은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도 조정권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률 차원의 근거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에 조정권고의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규칙 제·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헌법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근거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법무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조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행정소송법」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대법원규칙에 조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치주의의 실효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조정은 행정소송과 친하지 않은 제도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법원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에게 타협과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조정권고제도 인정 자체에 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근거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박지영	02) 788-4547
관련 부처	대법원	-	-	-	-

3) 정부에서는 2007. 11. 19.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국회 미제출) 정부에서 마련한 2건의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조정권고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사법신뢰도 개선방안 강구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사법신뢰도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OECD 국가 중 사법신뢰도 순위가 39위이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27%에 불과한 바, 실질적인 사법신뢰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 6. 발표 대책 시행 또는 시행 준비 중
 - 기일 외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 부당한 전화변론에 대한 녹음, 부당 변론 신고센터 개설,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
 - 법관 비위 관련 대책 추진 또는 추진 예정
 - 법관 비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연임심사 강화
 - 전관예우 의혹 해소를 위한 대책 시행 중
 -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양형기준의 수립,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국선변호의 확대
 - 재판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 시행 중
 - 1심 집중,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및 확대,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법정 변론 녹음, 전자소송 확대 시행, 국민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그림자 배심, 법원방문 확대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 6. 발표 대책 시행 여부
 - 기일 외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공표(이행 중)
 - 부당한 전화변론에 대한 녹음 : 통화녹음파일 관련 보안시스템 개발(이행 중)
 - 부당 변론 신고센터 개설 : 코트넷에 '법조윤리 신고센터' 개설 완료(이행)
 - 퇴직 법관 프로그램 마련(계획 수립중)
- 법관 비위 관련 대책 시행 여부
 - 징계부가금 부과 : 「법관징계법」 입법예고(이행 중)
 - 연임심사 강화(계획 수립중)
- 전관예우 의혹 해소를 위한 대책 시행 여부
 -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미이행)
 -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 국선변호의 확대(계획 수립중)
- 재판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 시행 여부
 - 1심 집중(이행 중), 전자소송 확대 시행(이행)
 - 실질적 공판중심주의(미이행)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및 확대(계획 수립중)
 - 국민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그림자 배심, 법원방문 확대(이행 중)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법정 변론 녹음(계획 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 12. 에 권고의견을 공표하였고,⁴⁾ 부당한 전화변론에 대한 녹음과 관련하여 2017. 1. 통화녹음파일 보안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부당 변론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하여 2016. 12. 코트넷에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는바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퇴직법관 프로그램 마련은 검토 중에 있는바 향후 제도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위 법관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법관징계법」 개정안⁵⁾이 입법예고(2017. 5. 26.)

4)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권고의견 제1호를 공표



되었는바 향후 법률 개정 경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연임심사 강화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전관예우 의혹 해소와 관련하여 「변호사법」⁶⁾ 및 「공직자윤리법」⁷⁾ 개정은 별다른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 국선변호의 확대에 관하여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대법원은 전관예우 관련 법령 정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심 집중과 관련하여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를 전면 개정⁸⁾하고(2017.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16. 10.), 전자소송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종이독촉 사건 전자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은(2016. 11.)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및 확대, 국민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그림자 배심, 법원방문 확대에 관하여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로 특별한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백상준	02) 788-4544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5) 법관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수수·횡령 및 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기금을 부과

6) 퇴직 전 근무기관 사건 수임제한

7) 취업제한기간과 업무취급제한기간 연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의 퇴직 후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 취업 제한

8)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 항소심 역할 정립



■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판결문의 실질적 공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 진행
 - 대법원은 판결문의 실질적 공개 확대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중심으로 2017년 2월 까지 해외 사례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함과 아울러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앞으로도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업무에 관련자들이 수시로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공개제도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향후 개선 방안 검토
 - 판결문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공개성·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은 판결문 인터넷 공개의 실질적 취지 실현을 위해 검색 조건 합리화 등 접근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나아가 판결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및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비실명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 진행 및 향후 개선 방안 검토(이행 중)
 - 판결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초안 작성(2017. 2.)
 - 이후 현재까지 변호인 성명공개여부 등 관련 쟁점 추가·보완 연구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 연구는 2017. 2. 기준으로 단지 초안 단계에 불과하였고 2017. 7. 현재까지도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추가 보완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판결서 공개를 위한 별도의 기관 창설 여부
 -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성명공개 여부
 - 판결 공개 및 비실명 처리 시스템의 통합 여부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비실명 처리 시스템 구축방안
 - 수수료 부담 관련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제 등

3. 개선방안

- 판결문 공개제도는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문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이나 비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었음
 - 판결문 공개제도는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⁹⁾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6. 30.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6. 30. 사법제도개



-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어렵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검색기능이 없어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판결문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또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게 됨
- 판결문 공개제도의 입법취지인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과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백상준	02) 788-4544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대법원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혁특별위원장 제안 제안이유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대법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선번호 선정대상의 확대는 예산상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인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는 필요적 국선(형소법 제33조제1항) 외에 청구국선(형소법 제33조제2항) 및 직권 재량국선(형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정 시에는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국선번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피고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사건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선번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국선번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책정 과정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희망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선번호인 선정요건 완화 등 대책 마련 여부
 -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의 청구국선과 관련하여 예규 개정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시점 기준으로 국선번호인 선정 요건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것은 없음(계획 수립중)
 -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의 재량국선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임(계획 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형사공판(제1심 기준) 통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상반기 기준 119,881명→123,603명→128,035명)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상반기 기준 43.1%→47.2%→47.5%)

구 분		피고인 수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비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 비율
2015년	상반기	119,881	56.9	43.1
	하반기	139,543	52.0	48.0
2016년	상반기	123,603	52.8	47.2
	하반기	152,471	49.3	50.7
2017년	상반기	128,035	52.5	47.5

-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의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제도 개선이 지체된 이유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선정요건 완화와 관련된 근거규정 개정이 바로 추진할 수 없었던 사유는 한정된 예산에 비해 예산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러나 예산 증가율은 개선된 제도의 시행일에 관련될 수 있을 뿐, 예산 증가와 무관하게 제도 개선안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대법원의 위 답변은 제도 개선 자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는바, 관련 예규 개정 상황 및 그 정책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완화 대책으로 청구국선[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법 제33조제2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2017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예규 등을 개정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임”
 - “더불어 형소법 제33조제3항(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내용 외에 더 추가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국선변호인 선정은 각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도 필요한 문제이며, 향후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특히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의 청구국선 및 제3항의 재량국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백상준	02) 788-4544
관련 부처	대법원	-	-	-	02) 3480-1217

감사원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감사결과의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2)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2016년 1월 이행관리 전담부서(감사결과 이행관리과)를 신설함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이행 현황을 상시 관리하면서 감사결과의 적기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 2016년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별도로 감사하여 미이행 혹은



부당이행 등 16건을 지적(처분요구)하였음

- 앞으로도 감사대상기관의 미이행 혹은 부당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감사결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 검토 여부**

- 2016년 1월 이행관리 전담부서(감사결과이행관리과) 신설(이행완료)
-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태에 대한 별도 감사 실시(지속)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이행 독촉 공문 시달(지속)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이행관리 유의사항 공문 시달(이행완료)

2)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16.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외에 이행관리 실태에 대한 별도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이행 독촉 공문 시달 등 이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미 2016년 1월 전담부서인 '감사결과이행관리과'를 신설하여 그간 개별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 이행관리 하던 것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감사결과 이행을 관리·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함
- 또한, 매년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태에 대한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주의 등 조치를 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를 별도 실시
- 감사결과 이행기간을 도과한 사항에 대해 각 감사대상기관에 2017년 2월 및 6월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회보가 오면 신속히 검토·처리하거나 보완요구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관리를 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7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431개 기관에 이행관리 완결 요건 및 사례 등을 정리한 ‘이행관리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규범	02) 788-4541
관련 부처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감사결과이행관리과	-	02) 2011-2301

■ 전문분야의 감사 전문인력 확보·양성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 전문인력 확보·양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감사원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 등 전문분야의 감사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할 것

2)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감사원은 국방·방위산업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 17개 전문 분야의 「분야별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이 중 국방·방위산업 분야 및 정보통신(사이버보안 등)에 대해서는 그간 전문인력 2명 및 3명을 각각 채용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전문 분야의 감사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분야의 감사 전문인력 확보·양성 여부

- 17개 전문 분야의 「분야별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 운영(이행 중)
 - 2017년 5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6명을 추가로 채용(이행)

2)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감사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감사원은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분야별 전문인력 지정·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다음의 표와 같이 5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6명을 추가로 채용함

▮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현황(2017년) ▮

전문분야	방재안전	대기환경	도시계획	교통	토목	계
채용인원	1	1	1	1	2	6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규범	02) 788-4541
관련 부처	감사원	사무처	인사혁신과	-	02) 2011-2582

헌법재판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헌법재판 미제 및 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미제사건 및 처리기간 지연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 헌법재판 지원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 및 처리기간 지연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2년~2013년의 재판부 교체 및 2013년에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처리 등으로 인해 2014년에 미제사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년경과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2013년, 2014년에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에 있음



- 우리 재판소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재판관 전속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동종사건은 병합 심리하는 한편 재판부에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국가적으로 조기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나, 일정기간 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의 실효성의 없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사건처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Ⅲ 최근 5년간 미제사건 현황 Ⅲ

2016. 12. 31. 현재

구분	합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소계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경과
2012	848	310	538	265	211	62
2013	743	258	485	185	209	91
2014	824	300	524	174	234	116
2015	746	325	421	152	163	106
2016	721	307	414	178	147	89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제사건 및 처리기간 지연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수행 여부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공동부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연구부를 재판관별 전속연구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행)
 - 동종 사건들은 병합하여 심리(이행 중)
 - 장기미제 사건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재판부에 통지(이행 중)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헌법재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사례 및 다양한 여론과 상충되는 학설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심판기간을 준수하여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정당해산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법의 시행이 임박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더욱이 2016년 12월 접수된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면서 부득이하게 타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즉 6개월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과 같이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6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실제로 최근 2017년 6월 29일에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한 총 8건의 심판사건에서 6개월 내에 종국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 가장 빠른 결정으로서 7개월이 걸린 사건을 비롯하여 1년 이내의 결정이 2건, 1년에서 2년 이내의 결정이 5건, 2년이 넘는 결정이 1건이었음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의 종류나 그 범위를 고려할 때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훈시규정으로 봐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신중한 심리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일견 이해할 수도 있음
 - 그러나 180일을 약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건이 종국결정에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건을 청구한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Ⅱ 헌법재판소 사건의 종국결정 소요기간(2017.6.29. 종국결정 사건) Ⅱ

사건번호	접수일자	소요기간
2016헌가1	2016.1.6.	약 18개월
2015헌바29	2015.1.14.	약 30개월



사건번호	접수일자	소요기간
2015헌바243	2015.7.17.	약 23개월
2016헌마719	2016.8.26.	약 10개월
2016헌바394	2016.11.18.	약 7개월
2015헌마654	2015.6.19.	약 24개월
2016헌마110	2016.2.17.	약 17개월
2015헌바376	2015.11.10.	약 19개월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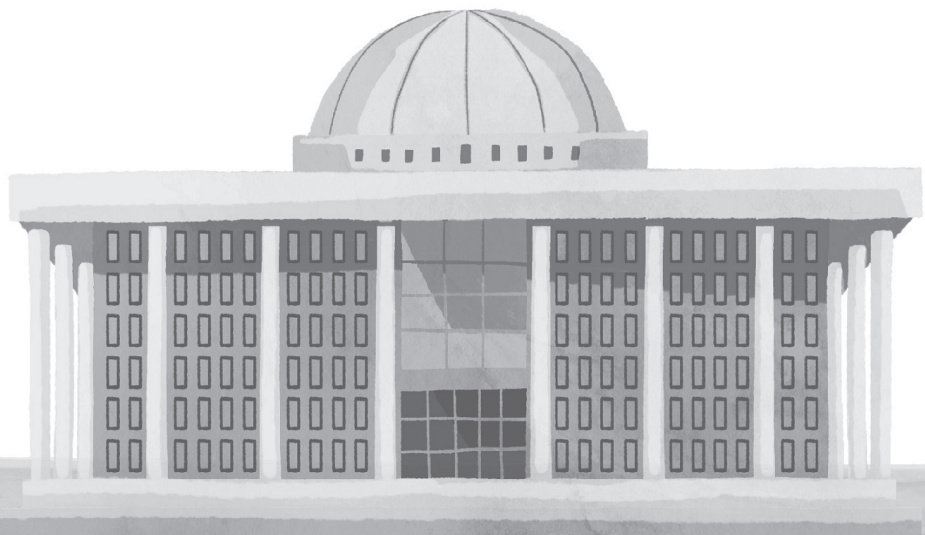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 종국결정의 기간을 실정에 맞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거나 가급적 기간 내에 종국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스템을 대폭 보완하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국가적으로 조기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나 일정기간 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은 헌법적 쟁점에 관한 중장기적·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을 지원하며, 실제 접수된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사건의 심리 및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헌법연구관 및 재판사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처 심판사무국 인력 등의 인적자원 확충을 통해 신속한 심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규범	02) 788-4541
관련 부처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심판제도과	박재은	02) 2075-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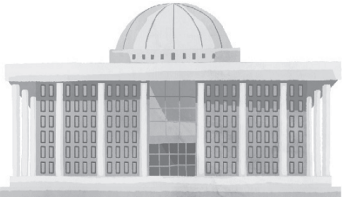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국방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방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의료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방부	군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국방부	군 병원 약사 부족 및 무면허 의무병의 조제 실태,약품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군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17년 예산에 사용연한(20년)이 경과한 노후 의무장비 교체 및 군병원 시설개선 소요를 중점적으로 반영
 - 첨단 의무장비(MRI·CT) 노후 교체 및 구형 표준형 구급차 노후 교체소요(48대) 전량 반영 등 전년 대비 22.8% 증액 반영



- 일동병원(40억, 공사비), 홍천병원 리모델링 소요(6.5억, 설계비) 반영
- 「'17~'21 군 보건의로 발전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의무장비 및 군병원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06년 군 의무발전계획에 따라 '06~'08년에 집중적으로 도입되어 노후화된 의무장비 노후 교체 추진
- 군병원 약사부족 및 무면허의무병 조제 실태 개선
 -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자격을 취득한 의무병을 모집하는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추진
 - 군병원의 의무병을 면허·자격을 소지한 간부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무간부 증원(간부전환 321명, 군병원 의무병 491명 감축) 추진
- 약품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책 마련
 - 국방부 및 의무사에서는 전 군병원에 대한 감찰 특별점검 및 지휘관 특별교육을 실시
 - 군의약품관리 표준(안) 하달 등 약품관리체계 개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군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관련, 노후화된 각종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 '18~'22 중기계획 예산에 반영(이행)
 - 전문의무병 모집 및 입영(이행)
 - 의무간부 증원(추진예정): '18년부터 의무간부 단계적 확충
 - 고위험 의약품 관리 규정 및 군 의약품관리 표준(안) 하달(이행)
 - 군의관, 간호장교 안전교육 정례화(월 1회) 및 응급실 근무자 교육 강화 및 상시 평가체계 구축(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군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각종 노후화된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요판단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군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그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노후장비와 시설에 대한 보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민군 합동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군 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료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사단의무대 이하 1차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발견 및 치료 지연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아울러 군의관 부재 시 의무병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제기되어 왔음
 -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의 영역과 난이도에 따라 2가지 방향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의무병 모집 및 입영, 군병원의 의무간부 증원 등이 그것임
 - 이러한 개선방안은 의료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군내 전문의료인력의 충원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형혁규	02) 788-4553
관련 부처	환경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	02) 748-6640



■ 군 음부즈만 제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군 음부즈만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방부	음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군인권보호관 도입관련 연구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16. 11. 23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안보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지휘권 보장 및 군사 보안 유지, 군에 대한 전문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 개정안 중 불시방문조사권(안 제54조), 수사중 사건 조사권(안 제55조), 수사·재판중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불가 조항(안 제56조) 등 일부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 군 인권실태 진단을 통해 군인권보호관 등 군내 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을 객관적으로 모색함
 - 군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KIDA) '17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였음
 - 법조인, 예비역,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및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군 읍부즈만을 국방부 외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지휘권 보장 및 군사 보안 유지, 군에 대한 전문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의 신설을 통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1항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무제한적인 조사 및 권고 권한 부여로 군의 지휘권 위축과 군사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면 국방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이견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군인권보호관’을 군 외부(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국회와 국방부와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병영내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이렇듯 장병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1) [시행 2016.6.30.] [법률 제13631호, 2015.12.29., 제정]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 더욱이 군 외부에 군인권보호관을 둘 경우 지휘권 보장 및 군사 보안 유지가 어렵고, 군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군 내부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 왜냐하면 병영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군 외부에 두는 것은 지휘관이 양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휘권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군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여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전문성의 차원에서도 인권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군 고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증진은 민군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여전히 원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병영내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바와 같이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형혁규	02) 788-4553
관련 부처	국방부	인사복지실	병영정책과	-	02) 748-5153

병무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영대상자 심리검사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입영대상자의 심리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병무청	현역복무부적합자 입영배제를 위한 심리 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병무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 정밀검사 체계마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검사반별로 2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2016년 5개 반, 2017년 7개 반, 2018년 10개 반)
 -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新인성검사를 도입하였음(2017년 1월)



표 1 新인성검사의 주요 개선 내용

구분	2016년(기준)	2017년(개선)
문항	20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1문항(2 Part로 구분) - 1부 106문항, 2부 165문항
특징	정신질환 여부 선별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상태와 성격특성 파악 - 게임중독 등 신규척도 추가
응답 방식	이분화 '예/아니오'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커트 4점척도 양식 -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함(2016년 323명, 2017년 686명)
 -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임상병리사 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역복무부적합자 입영배제를 위한 심리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건강 전문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이행 중)
 - 사고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新인성검사 도입(이행)
 -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 기반 마련 및 도입 추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현역복무부적합자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검사반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점차적으로 증원·배치할 계획임
 - 2018년까지 각 반에 2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2017년 7월 현재 7개 반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증원·배치가 완료되었기에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수검할 대상자들은 일반입영대상자 중 정밀검사대상자¹⁾외에도 7급 재신체검사자와 귀가자 등 다수이므로 1개 반 2명의 의사로 정밀검사가 충분한지의 여부 등 배치효과에 대한 추후 평가가 필요함
- 新인성검사에는 건강상태와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척도를 추가했고, 전체 문항수도 늘렸으며, ‘예/아니오’의 이분화 된 응답을 리커트 4점 척도 양식으로 변경하여 좀 더 세밀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입영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新인성검사의 실질적 효과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 또한 자체 종합심리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종합심리검사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중임. 또한 동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심리검사인원 증원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므로 입영대상자 심리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심리검사인원 증원과 관련 행정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자체 종합심리검사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역복무부적합자 입영배제를 위한 제도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입영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제도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현역복무부적합자 입영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수요’ 때문에 적극적인 입영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영대상자 검사의 최종단계인 정밀검사까지 선별되었다가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하는 병사들에 대한 경로 추적을 위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리검사제도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일반입영대상자 수검자 중 15~20%가 2차 검사 대상자로 선별되며 이들 중 70%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정밀검사대상자로 선별된다고 함



- 참고로 현역 입영 후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병사들의 80% 정도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사유로 하는데, 이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정이 정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도희	02) 788-4556
관련 부처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	044) 481-2937

방위사업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위사업청	전문성을 제고하고,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사업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개청 이후,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인력 지속 충원 중
 - 변호사(12명), 회계사(14명), 함정·항공분야 등 사업관리 전문인력(전문임기제 16명) 충원
 - 3개년('15.5.~'18.6.)간 군인 정원(300명)을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추진 중
 -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



- 2017년 7월 현재 197명 전환 완료, 2018년 6월까지 경력직 공무원 300명 채용 완료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인력 지속 충원 중(이행 중)
 - 군인 정원(300명)을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추진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 답변 시점 현재 변호사(12명), 회계사(14명), 합정·항공분야(16명)를 포함하여 총 42명의 전문인력이 충원되었으므로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하지만 방위사업청 전체 정원이 1,600명이므로 민간전문가 채용률은 전체의 2.6% 정도임. 또한 이들 중 다수가 방위사업감독관실(2016년)과 원가회계검증단(2011년) 등 신설조직에 채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조직의 민간전문가 채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음¹⁾
- 군인 정원 300명을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현재 추진 중으로 2017년 7월 현재, 2016년 대비 공무원 정원은 96명 증가하였고, 군인 정원은 100명 감소하였으며, 현원 역시 공무원 70명 증가, 군인 44명 감소로 문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참고로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는 정원 기준으로는 달

1) 민간전문가 채용인원을 부서별로 보면 변호사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 7명 이상, 나머지 사업부, 계약부별로 1명씩 채용하였고, 회계사 채용인원은 원가회계검증단 6명 이상, 나머지는 방위사업감독관, 기획조정관, 재정분석기획관 각 1명씩임. 그 외 전문임기제 채용인원은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있음



성되었으나 현원 기준으로는 아직 6: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3. 개선방안

- 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 정책은 개청 이래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목표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새롭게 확대될 공무원 직위에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재직 중이던 군인이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채용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이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만 바뀔 뿐이며 오히려 계급정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민간전문가 채용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 8월까지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 93명 중 41명이 퇴직 군인으로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만 바뀐 채 채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방위사업청 및 산하기관의 각 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업무방침」 및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에 제안서 평가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²⁾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도희	02) 788-4556
관련 부처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	02) 2079-6040

2) 201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AESA 레이스 사업 중 체계개발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군인 3명(국방부 1명, 공군 2명), 정부 측 인사 5명(국방과학연구원 3명, 국방기술품질원 1명, 방위산업센터 1명), 그리고 학계 1명임을 지적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함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방침 및 방위사업청의 예규에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외부인사 위촉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정책·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방위사업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군 출신의 노후 대책이 아닌 외부 인사가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사업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출연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군 경험(국방분야 정책참여 포함) 등을 활용하고자 정책·자문위원 제도 운영 중
 - 출연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위원 운영 발전 방안 검토 예정
 - 향후 정책·자문위원 발전방안을 수립하고(2017년 5월 예정) 출연기관 내부규정 보완(2017년 6월 예정)을 추진할 계획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자문위원회제도 개선 방안

- 정책·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 발전방안 검토(이행 중)
- 정책·자문위원 발전 방안 수립(미이행)
- 출연기관 내부규정 보완(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시정 및 처리결과로 “출연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방 분야 정책, 군 경험 등을 활용하고자 정책·자문위원 제도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정책·자문위원회제도 개선방안이므로 방위사업청의 답변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로 보기어려움
- 정책·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애초에 2017년 5월 수립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2017년 8-9월 수립 예정임
- 외부인사 자문 활성화를 위한 출연기관 내부규정 보완은 애초에 2017년 6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2017년 9월까지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3. 개선방안

□ 방위사업청 문민화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³⁾ 현재 정책·자문위원 운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⁴⁾

3)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는 개방적 국방획득사업 추진, 민간부분의 업무 전문성 보강을 통해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 정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방위사업청 주요 보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201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출연기관 주요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문위원 및 정책위원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고 함)은 제7조와 13조에 연구자문위원과 정책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운영요령 제7조는 연구자문위원의 자격을 “전임 합참의장”으로 규정하여 군 출신 외에 외부인사가 연구자문위원이 될 가능성이 없음. 또한 제13조의 정책위원의 자격으로는 “연구소 발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로 “연구소 국방 분야 당연직 이사를 역임한 자”로⁵⁾ 규정되어 군 출신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인사 외에 민간 외부인사의 위원 위촉이 어렵게 되어있음.⁶⁾
 -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기조에 부응하고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의 시정을 위해서는 운영요령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수적임. 특히, 전문성 있는 외부 민간인의 연구·정책 자문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운영요령 제7조에 “관련 분야 전문성이 높은 외부 민간인”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운영요령 제14조 (위촉)에 “정책위원은 5명 중 2인 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등의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국방기술품질원의 「자문위원운영요령」은 제4조에서 자문위원의 자격, 정원 및 소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사하게 군 출신과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혹은 관련자가 대부분임
 - 「자문위원운영요령」 제4조에 의하면 정책위원은 “기품원의 국방분야 당연직 이사를 역임한 자”로⁷⁾ 규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연구위원의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 출신과 국방기술품질원 출신 혹은 관련전문가가 대부분이나 민간전문가도 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제4조 2. 라.) 하지만 적극적으로 몇 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부재하므로 적어도 가-라의 각 항에서 1인 이상 혹은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⁸⁾

현안에 대해 국방 분야 정책과 군 경험등을 활용하고자, 군 출신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는 산하 두 기관의 내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분야 당연직이사는 연구소 당연직 이사 중 군 및 국방관련 정부부처/출연기관 소속인 자를 의미하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임

6) 2011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임명된 10명 중 7명은 前참모총장 출신이고 나머지 3명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임(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7)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분야 당연직 이사는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품질원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전력지원관리실장임

8) 2011년 이후 2016년 10월 현재까지 임명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자문위원은 총 16명인데, 그 중에서 11명은 예비역 장성이었고, 나머지 5명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나타남(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표 국방품질기술원 연구위원의 자격기준(자문위원운영요령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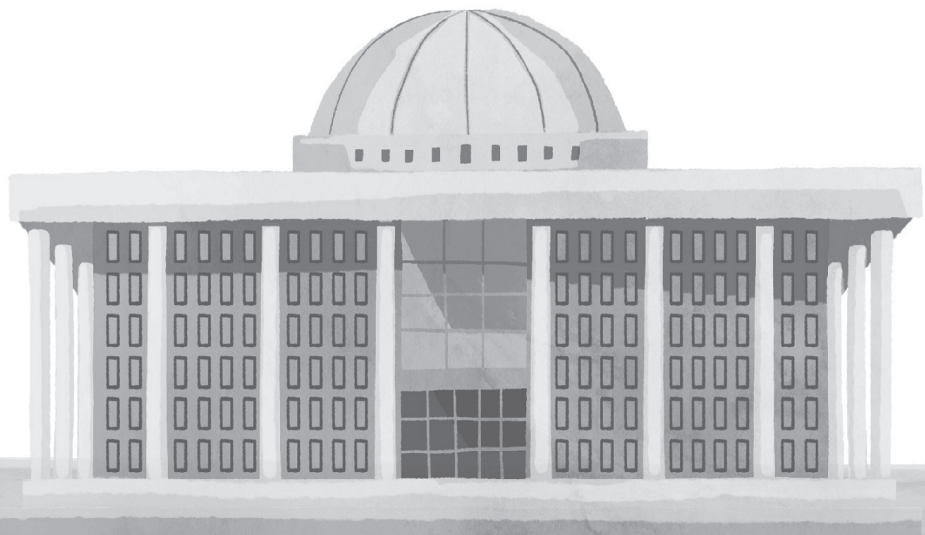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조항	내용
제4조 2. 연구위원	<p>가. 중장급 이상의 장교로서 각 군에서 기품원의 업무와 연관된 직위를 1년이상 역임한 자</p> <p>나. 기품원의 업무와 연관된 직위의 고위직 공무원을 1년 이상 역임한 자</p> <p>다. 기품원의 본부장급 이상의 직위를 1년 이상 역임하고 퇴직한 자</p> <p>라. 기타 기품원의 주요 임무·기능 또는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시민단체·軍·學·研 분야에서 상기 각 목과 유사한 경력을 소지한 자</p>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도희	02) 788-4556
관련 부처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	-	02) 2079-6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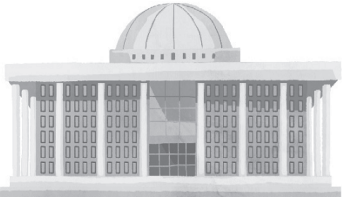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외교통일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외교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드 배치를 잠정 연기 또는 보류하는 방안 검토
외교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
외교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특사 파견 정보 전달 등 전략적 소통 방안을 검토할 것
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동북지역 민간 교류행사의 취소 및 연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한·미 국방당국간 동 배 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중국에게 우리의 자위적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 중임
 - 구체적으로 첫째,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 둘째,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이익 침해 의도 없음, 셋째, 북핵 해결시 사드 불필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
 - 중국측에 양국 관계의 발전이 특정사안에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과 북한문제(북핵문제 포함) 관련 협조 필요성을 지속 강조
- 주중한국대사관은 사드배치 발표 이래 주요 기업 개별 면담, 기업간담회, 중국 지역 경제담당관 회의(11개 공관), 중국지역 공관장 회의(11개 공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리기업 영업환경 모니터링, 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 종합적,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주선양총영사관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당지 진출 우리 교민기업인 대표들과 수시 접촉하여 특이동향이나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¹⁾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임
 - 교민·기업사회와 긴밀한 소통·정보공유를 통한 정확한 상황파악, 동북3성 정부 접촉을 통한 협조요청, 금년 한중수교 25주년 모멘텀을 활용한 한·동북3성간 경제·문화·청소년교류 등 덜 민감분야 교류행사 발굴·활성화 지원 등 노력 강화 예정
 -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동북3성(요녕성은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이 한국과 같은 안정적인 대외협력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도 적극 활용 필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²⁾

-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공조 확보위해 사드배치 잠정 연기 또는 보류 검토 여부
 - 한·미 간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이행 중)
-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여부
 - 우리 기업의 영업환경 모니터링, 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이행 중)

1) 2016년 9월초 예정이었던 한·중 민간 우호교류 행사인 '선양한국주'가 선양시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으며, 사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2)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20.)



- 중국 측에 특정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입장 전달(이행)
- 중국 측에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조 필요성 강조(이행)

■ **중국에 특사 파견, 정보 전달 등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방안 검토 여부**

- 중국 측에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자위적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소통 지속 중(이행 중)

■ **동북지역 민간 교류행사의 취소 및 연기 방지 대책 마련 여부**

- 우리 교민·기업인 대표들과 수시 접촉 통해 피해 발생 여부 파악 중임(이행 중)
- 우리입장 설명 및 대응방안 협의 중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 사드배치 잠정 연기 또는 보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다만, 사드배치의 잠정적 연기나 보류를 전제로 하는 심도 있는 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및 중국 정부와의 전략적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9월 5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2017년 2월 18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에 자위적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응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중국 정부에 사드배치에 대한 우리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정책적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색된 관계를 완화하고 신뢰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상대국 ‘맞춤형 홍보 방안’ 등 정책공공외교의 활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모색이 필요함
- 중국인들은 언사에서 이해득실을 앞세우기 보다는 상호간의 ‘신뢰’나 ‘우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형식적인 외교적 수사보다는 양국관계의 신뢰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드문제로 한·중 간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보다는 고도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	-	02) 2100-7411
		주중국대사관	-	-	8610) 8531-0700
		주선양총영사관	-	-	8624) 2385-3388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한 외교적 대응을 할 것
외교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및 선원에 대한 중국정부의 수사·검거·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중국 내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할 것
외교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범인 국내 인도를 통한 우리 사법당국의 처벌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한·중 어업문제 협력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그간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향후에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중간 어업관련 정례 협의체 및 각종 외교경로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측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임
 -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단정 침몰 사건('16.10.7.)을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가해 어선에 대한 증거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도주 선박 및 어민에 대해 수사·검거·처벌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중국측에 불법조업 단속 및 어민 대상 계도·교육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³⁾

- **엄정한 외교적 대응 여부**
 -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 노력 촉구(이행 중)
- **중국정부의 수사·검거·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상황 주시 여부**
 - 가해 어선에 대한 증거자료 중국 측에 제공(이행)
 - 도주 어민 및 선박에 대해 실효적 조치 취할 것 촉구(이행 중)
- **한·중 어업문제 협력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여부**
 -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및 어민 대상 계도·교육 활동 강화 요청(이행)
 - 한·중 양자간 차관급 이상 고위급 협의(미이행)

3)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19)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외교부는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에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⁴⁾
 - 중국 정부에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결과 중국 관공선의 우리 주변해역에서의 자국어선에 대한 계도 활동이 증가함
 - 2017년 7월 10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불법침범 중국어선은 작년 대비 78% 감소했고, 단속 어선도 39%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⁵⁾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는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로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3. 개선방안

□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일 수도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한 데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도 하나, 중국의 어업자원 관리정책⁶⁾과 북·중 간 어업권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음⁷⁾

4) 2016년 10월 19일 한·중 ‘차관보급’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논의됨

5) “불법 중국어선 강력한 단속 효과 ‘톡톡’: 상반기 서해 NLL해역 등 우리 해역 불법침범 눈에 띄게 줄어”,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7년 7월 10일.

6) 중국 정부는 연안 어종 남획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든 수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4개월 간 연안 어업 금지 조치(모라토리엄)를 추진해왔으며, 2020년까지 글로벌 어획량을 천만 톤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에 있음. “China Cracks Down on Coastal Fisheries”, Science, 12 May 2017.



- 둘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업분야와 관련하여 한·중 간 수산당국 간의 협의기구(어업공동위원회), 해경 간의 정례회의(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외교부 간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 조율이 필요함
- 셋째, 어업문제 등 한·중 간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양국 간 대화채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7월 5일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음
 - 그러나 2016년 하반기는 중국 정부가 사드문제로 인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⁸⁾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3과	-	02) 2100-7759

■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7) “미국 北어업권거래 제재’...중 어선 불법조업 감소 기대”, 「연합뉴스」, 2017년 3월 29일자.

8)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19)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5.12.28.)의 내용·형식·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 합의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면담 실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한 바, 동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이번 합의는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지난 24년간의 한·일간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피해자들이 고통이라는 시급성⁹⁾, 상대가 있는 외교협상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 피해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3대 핵심사항¹⁰⁾을 최대한 반영한 것임
 - 그 결과 ①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재확인, ② 어떠한 한정어나 수식어 없이 일본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③ 일본 총리의 공개적·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이행 조치로서 ④ 한국 설립 재단에 ‘순수 일본정부 예산 10억엔 출연’에 합의한 것임
- 정부 간 합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동 건의 경우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내용이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있음
 - 아울러 금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아니나, 조약이나 협정보다 구속력의 무게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 양국 외교장관이 공식 발표한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의 국익, 대외 신뢰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및 한·일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할 경우 더 나은 합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며, 정부로서는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여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

9) 합의 당시 평균연령 89세, 합의 이후 피해자 할머니 8분 별세 등

10) 피해자들의 3대 핵심 요구사항: ① 일본정부 책임 인정, ②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사죄, ③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등



- 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봄
- 정부는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면담하면서 합의 및 합의 이행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현재 12.28. 위안부 합의 당시 기준 생존자 46명 중 3/4에 해당하는 34명이 합의를 평가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함
 - 12.28. 합의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요구도 감안한 것인 바, 동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대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¹¹⁾

- 위안부 합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여부(이행)
 -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나 협정보다 구속력의 무게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 합의 파기는 대외 신뢰도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정부로서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 우선
- 위안부피해자 면담 실시 여부
 - 2017.7. 현재 생존피해자 47명 중 35명과 면담하여 모두 재단사업 수용의사 확인(이행 중)
- 위안부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고려 여부(이행)
 - 동 합의의 성실한 이행 예정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나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향후에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11)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19)



- 위안부 피해자의 면담 실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위안부 합의 이후 2016년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생존 및 사망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임¹²⁾
-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첫째,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로 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 규모가 충분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일본 측이 제시한 출연금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결된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의결되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상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넷째,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하는 등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	-	02) 2100-7338

12) 2017년 7월 현재, 생존피해자 46명 가운데 35명, 사망피해자 199명 가운데 65명에 대한 지급이 결정됨. 동 사업에 따라 2015년 12월 28일 합의일 기준 사망피해자에 대해 2천만원 규모, 생존피해자에 대해 1억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함. 화해·치유재단, <http://www.rhf.or.kr/index.php> (검색일: 2017년7월20일)



■ 대북제재 실효성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대북제재 실효성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그간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할 것
외교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보고, 북한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대화·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외교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북 제재·압박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화 기조의 실효성을 재평가 할 것
외교부	대북제재는 대화를 전제로 한 수단임을 유념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시발점이 아닌 종결점으로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
외교부	대북제재 시 Secondary Boycott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안보리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함
 - 동 결의 채택 후 11개월여가 지난 현재(2017.2.), 국제사회는 북한의 해운·항공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대외 군경협력 단절, 인적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출됨
 - 단, 결의 2270호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북한산 석탄 수출 등 관련 민생예외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이러한 예외가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며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함
 - 특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나, 북한과의 대화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북한이 핵개발에 매진하며 비핵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강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것임
 - 따라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핵으로는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 불가하며 비핵화 외에는 출로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집중적·전방위적 제재압박을 가해야 할 때임
-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 홍상그룹 제재 등에 대해 미국이 Secondary Boycott¹³⁾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 여타 대북거래 기업·개인들의 북한과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 정부는 '16.12.2. 홍상 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효과와 한계성 분석 여부(이행)
 - 보다 강력한 실효적 제재 조치 및 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 미국 대북 제재·압박 기조의 실효성 재평가 여부(이행)
 - 집중적·전방위적 제재·압박 필요
- 북한 핵동결을 전제로 대북 대화·교류 재개 방안 모색 여부(미이행)
- 대북제재는 대화를 전제로 한 수단임을 유념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종결점으로 하는 대북정책 추진 여부(미이행)
- 대북제재 시 Secondary Boycott의 실효성 검토(이행)

13)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유엔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대한 효과와 한계성에 대한 분석은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 대북제재 시 Secondary Boycott의 실효성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신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비교·분석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존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며,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¹⁴⁾
 - 한편, 신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과의 대화 혹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¹⁵⁾로 채택하고 있어 방안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단	-	-	02) 2100-8500

14) "Barack Obama's 'Asian Pivot' Failed. China is in the Ascendancy", the Guardian, Sunday 25 September 2016; Mike Mullen, Sam Nunn, Adam Mount,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CFR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2016, pp. 27~43; Jane Harman and James Person,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ashington Post, 30 September 2016.

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공공외교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공공외교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사물놀이, 다도문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외교의 범주를 확대할 것
외교부	해외한국문화원의 전략적·체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
외교부	전략의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외교모형을 수립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세계 각국에 소개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예정임
 - 아울러, 외교부의 기존 공공외교사업(한국주간행사) 및 외교관계수립기념사업 계기 등에 사물놀이, 한국무용, 국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 예정
 - 2017년도 한·수단, 한·지부티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에 지자체 예술단(농악, 사물놀이, 전통 연희 등) 파견 예정
 - 외교부는 「공공외교법」 시행(16.8.4.)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 '2017-2021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작성 중인 바, 이를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임
 - 주뉴욕총영사관은 공공외교 대상으로 뉴욕주립대(NYU) 및 뉴욕 전미외교정책협의



회(NCAFP), 카네기 연구소(Carnegie Institute) 등 학계, 싱크탱크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A Korea In New York’이라는 단일의 콘셉트 아래 뉴욕에 상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와도 협력하여 공공외교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¹⁶⁾

-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여부(이행 중)
- 해외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 홍보 전략 수립 여부
 - ‘2017-2021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할 예정임(계획 수립중)
- 효율적 공공외교 모델 수립 여부
 - 2016년부터 ‘A Korea In New York’ 콘셉트 하에 현지 상주 공공기관 및 동포사회와의 협력 추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2021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동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으로,¹⁷⁾ 관계 정부부처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공공외교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으며, 해외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 홍보 전략도 수립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이행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유관단체 기관도 공공외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음

16) 외교부 담당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18.)

17) 외교부는 8월 중에 작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임(2017.7.25.)



- 따라서 ‘A Korea In New York’ 등은 새로운 공공외교의 모델이 개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우호적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말함
-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전략적·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외국 대중(Foreign Public)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공공외교의 전초기지인 재외공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국의 관습·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일방향적 전파가 아닌 쌍방향 공공외교 사업 등의 추진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 전통문화 가운데 사물놀이는 해외에서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특정 전통문화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통문화의 발굴과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문화의 홍보는 외교부 차원의 사업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임
 -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	02) 2100-7544



재외국민보호 강화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재외국민보호 관련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수요 증대에 따라, 영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영사인력 배치 기준도 개선할 것
외교부	경찰영사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변호사 자격자나 법률 전문성을 갖춘 자가 파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범죄 피해에 철저히 대응할 것
외교부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
외교부	현지어에 능통한 외교 인력을 확보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외교부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경찰주재관을 파견(56개 공관, 66명)하고 있으며, 경찰주재관이 없는 공관에는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건·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외교부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을 통해 영사 인력의 전문성(사건·사고 대응 능력 포함)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재외공관 부임자를 대상으로 부임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공관에 근무 중인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거점지역 공관으로 소집하여 ‘사건·사고 담당영사회의’를 개최 중임
 - 특히, 2017년 2월 1일 국립외교원 영사실습교육장 개소 등 영사교육훈련 강화 노력을 지속 중임



- 경찰 주재관 선발 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법률 전문성을 평정요소에 적극 포함시켜, 보다 능력 있는 경찰 주재관을 재외공관에 배치하여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함
- 주미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안전이 공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재외국민 보호 업무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이익보호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사건·사고 발생 인지 즉시 주재국 사법 당국 접촉을 통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영사조력(신속 여권 발급, 현지 안내, 경찰 브리핑 주선, 장례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주미국대사관은 수감자 보호와 관련, 주재국 사법당국을 반기별 1회 이상 접촉하여 우리 국민의 수감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수감자에 대해 최소 연 1회 면회를 실시중임
 - 수감생활 현황 및 가혹행위 등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 조력(출소 후 강제추방 가능성 및 절차, 수형자 이송제도 관련 안내 등)을 제공 중에 있음
- 주LA총영사관은 관할 지역 내 수감자(42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영사 면회를 실시하여 건강 상태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음
 - 수감자 면회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대한민국으로 수형자 이송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우리 국민이 부당한 수감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은 연 2회 수감자(1인/장기수) 방문 및 교도소장 면담을 통해 동수감자의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주멕시코대사관은 공관 직원들의 현지어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과테말라 근무 및 멕시코 현지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신입 경찰 영사가 부임하는 등 스페인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충원 중에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¹⁸⁾

18)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17.)



- **영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영사인력 배치 기준 개선 여부**
 - 재외공관 부임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이행 중)
 - 2017년2월1일 국립외교원 영사실습교육장 개소(이행)
 -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위주로 경찰주재관 파견(이행 중)
- **변호사 자격자나 법률전문성을 갖춘 경찰영사 파견 방안 수립 여부(계획 수립중)**
-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응 수립 여부**
 - 주재국 사법 당국과의 접촉 통해 경위 파악 및 공정한 수사 협조 요청(이행 중)
 - 피해자 가족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음(이행 중)
-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관심 제고 여부**
 - (주미국대사관) 주재국 사법당국과 반기별 1회 이상 접촉 및 해당 수감자 최소 연 1회 면회 실시(이행 중)
 - (주LA총영사관) 수감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영사 면회 실시(이행 중)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연 2회 수감자(1인/장기수) 방문 및 교도소장 면담(이행 중)
- **현지어에 능통한 외교인력 확보 여부**
 - (주멕시코대사관) 스페인어 강좌 운영 및 현지어 능통 경찰영사 총원(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영사실습교육장’을 신설하여 재외국민보호 실무자들로 하여금 수행자 면담 실습과 각종 시뮬레이션 과제 수행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한 재외공관의 관심은 일정정도 유지되고는 있으나 수감자 면회를 연 1회 수준으로 실시 할 경우 수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출국자 수 급증과 그에 따른 사건·사고 증가에 따른 재외국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음¹⁹⁾

19) 2016년 말 우리국민의 출국자 수는 2,200만명으로 대폭 증가('00년 대비 4배)하였으며, 우리국민 14,500명이 해외 사건사고 범죄 피해에 연루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 재외국민보호 개선 방안 논의 - 해외안전지킴의 현장, 영사콜센터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논하다”, 외교부 보도자료(2017.7.12.)



- 재외국민에게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영사협력원 운용’, ‘영사콜센터 운영’, ‘신속해외송금’, ‘긴급구난활동’,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 ‘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 ‘해외안전여행 정보 문자서비스(SMS)’, ‘위험지역 안전점검’, ‘NGO·선교단체 초청간담회’, ‘방송매체 및 출판물을 통한 홍보’ 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중임
-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 근거한 실무적, 개별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²⁰⁾
 -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02) 788-4551
관련 부처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	02) 2100-7139

20)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으나 각종 사건·사고 등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2017.2.



외교부 직원 성관련 비위행위 근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하여 외교부 직원의 성관련 비위 근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외교부	외교부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외교부	재외공관 자체 감사반 내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거나 내부인력을 보강하여 감사 시각지대를 최소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외교부는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비리 발생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현재 외교부 T/F를 구성하여 외교부내 성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외교부의 성 관련 비위 예방조치
 - 본부 교육: 매년 장관 참석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4개 성 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별 교육 실시
 - 재외공관 교육: 전 재외공관 대상으로 본부 제공 영상자료 및 매뉴얼을 활용한 4개 분야별 교육 실시
 - ※ 재외공관 교육실시 결과 본부 보고 의무화
 - ※ '15년 외교부의 교육 이수율(99점)은 전 부처 중 최상위권(여가부 발표)



- 재외공관 발령자 교육: 발령자 대상 부임 전 양성평등, 복무교육 실시(총3시간) 등
- 신고시스템 강화: 재외공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 부적격 공관장 스크린: 공관장 보임자 선정시 도덕성 분야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중 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적격성 여부 엄격 심사²¹⁾
- 외교부는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사건 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감사단에 적극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임
 - 특히 성희롱 관련 사건 발생시 성희롱 고충 상담 전담직원을 감사출장단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²²⁾

- 외교부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 외교부 차원 TF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여부(이행 중)
 - 본부, 재외공관, 재외공관 발령자 등 교육 여부(이행 중)
 - 신고시스템 강화 여부(이행 중)
 - 부적격 공관장 스크린 여부(이행 중)
- 재외공관 자체 감사관 내에 외부전문가 혹은 내부 인력 보강 여부(미이행)
- 성희롱 고충 상담 전담직원의 감사출장단 포함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외교부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²³⁾

21) '16년 공관장 심사 대상자 중 부적격자 비율 약 10.5%

22) 외교부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함(2017.7.24.)

23) "외교부,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 마련", 외교부 보도자료(2017.7.21.)



- 다만, 2016년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TF 구성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혁신 TF를 출범(7.11.)하고,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7.21.)함으로써 외교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재외공관 자체 감사관 내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거나 내부 인력을 보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외교부는 성희롱 고충 상담 전담직원을 감사출장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참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재외 공관 외교관의 성관련 비위행위는 한국 및 한국인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외교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무관용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재외 공관 외교관의 성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 보호주의, 권위주의, 성차별 등의 관행 청산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가 외교부 내에 확립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최근 발생한 외교관 성관련 비위행위²⁴⁾는 예측 가능했던 사건이었지만 조직 보호주의 폐해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견해가 있음
 - 둘째, 재외 공관 외교관은 해당 국가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 없이 해당 국가의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외교부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성 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외교관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대외 이미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조치가 요구됨

24)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성폭행 혐의 등

통일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부정책의 차별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타 부처와의 정책 차별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외교부·국방부와 차별화하여 통일부 존재 의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통일을 준비하는 주무부처임
 - 북한과의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업무 중 한 부분임
 -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서 비핵화와 통일의 길로 가기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 역시 통일부의 역할에 해당함
 - 현재 북핵은 과거와 전혀 다른 위협으로, 과거와 다른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임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화·교류 잠정 중단, 대북정책 관련 국론 결집(통일교육·탈북민 지원·통일준비 등)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임
- 앞으로도 통일부의 주요 정책 등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에 부합되도록 하겠음
 - 국방·외교 등 유관부서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의 차별화 조치 수행 여부**

- 차별화 보다는 국방·외교 부서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대안 이행)

■ **통일부의 존재 의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관련 정책을 통일부의 업무 중 일부라고 밝힘(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외교부 및 국방부와의 차별화 조치는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통일·외교·안보·국방의 특성상 각 부처가 국가이익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대안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통일부의 존재 의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통일부의 존재 의의를 강화하는 방안과 유관 부서와의 차별화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의 존재 의의는 “통일”과 “남북관계”인 바 이 영역에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외교부와 협조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대안적 방향제시도 중요하지만, 유관 부처와 차별화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한반도 긴장국면이 고조될 때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현	02) 788-4555
관련 부처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승신	02) 2100-5615

■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이산가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의 고통화를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상봉, 생사확인 등 해결책을 모색할 것
통일부	이산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영상편지 교환 노력을 기울일 것
통일부	유전자 수행업체에 대한 실태 보고서, 현장 방문기록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통일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제2차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제대로 마련하고 계획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통일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친자확인만 가능한 유전자 검사 방법 외에 2촌 이상 확인이 가능한 추가 검사방법 도입도 검토할 것
통일부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여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일 것
통일부	이산가족 면회를 위한 상설 면회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 향후 남북 대화 재개 시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당국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향후 남북대화시 이산가족 영상편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8,04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신규 희망자 대상 1,500편을 추가 제작할 예정인 바, 향후 남북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통일부는 수행업체의 주기적 업무보고 접수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유전자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음
 - 향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이산가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제 2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향후 동 계획에 따른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민간교류 경비 지원금 인상 및 교류 주선단체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현재 검체(타액, 모발, 혈액)를 보관하고 있는 바, 향후 2촌 이상 DNA확인을 위해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2017년도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3억원) 및 디지털박물관 구축(3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남북대화 재개시 여건이 되면 기 남북간 합의에 따라 금강산에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 정상화 문제도 협의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적,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 수행 여부**
 -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계획 수립중)
- **영상편지 교환 노력 여부**
 - 남북간 대화 창구가 열릴 경우 협의 남북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영상편지 제작(이행 중)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수행업체 관리 감독**
 - 통일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이행 중)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 이산가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이행)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 민간교류 경비 지원금 인상 등 지원 확대(이행 중)
- **이산가족 친자확인 및 2촌 이상 추가 검사 확대**
 - 검체 보관 뿐만 아니라 2촌 이상 확대하여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계획수립중)
-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관리**
 - 약 6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이행 중)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관련**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등 남북대화 재개 시 관련 시설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계획(계획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통일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특성상 상대편인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현실이 병존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음
-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접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사안들이 남북관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 북한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도주의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하는 정인분리(政人分離) 원칙을 남북간에 협의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현	02) 788-4555
관련 부처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이산가족	오미희	02) 2100-5896



■ 대북정책에서 제재와 협상의 투 트랙 전략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결실을 위해 제재와 협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임
 - ‘제재와 대화’,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정책임
 -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를 일관되게 견지함
 -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재와 협상의 투 트랙 정책의 수행 여부
 - 정부의 정책 자체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힘(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제재와 협상의 두 트랙 전략으로 설정하였는 바, 향후 대북 정책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리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새 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 기조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우리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현	02) 788-4555
관련 부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강연서	02) 2100-5778

■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상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유동자산에 대한 전액 피해지원을 할 것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개성공단 협력업체에까지 미치고 있는 바, 유동자산 문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통일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간접적 손실인 위약금 및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발생한 직접피해에 대해 기업 피해 규모,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책을 추진 중임
 - 특히, 유동자산은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이 허용하는 최대 지원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높여서 지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657억 원이며,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피해금액은 7,862억 원임

표 11 정부의 피해 보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업신고	정부확인
투자자산	5,738	5,120
유동자산	2,444	1,969
소계	8,182	7,089 (기업신고의 87%)
원청위약금	1,100	632
미수금	375	141
계	9,657	7,862

- 다만, 기업이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해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기존 보험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내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남북 경협에 존재하는 투자위험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향후 민간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의 피해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정부가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협력업체 소유 피해액도 함께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만큼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와 입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통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위약금은 가동 중단에 따라 기업이 입은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로서,
 - 간접적 피해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수금은 입주기업과 개성공단 내 다른 기업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기업 간 채권·채무인 바,
 - 이러한 미수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공단 중단으로 인해 갚아야 할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가 인정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 여부**
 -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017억 원을 지원함(2017.6.31.기준, 이행)
 - 투자자산 3,653억 원, 유동자산 1,240억 원, 근로자 위로금 124억 원(이행)
- **유동자산 문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치 등 대책을 강구 여부**
 - 신규·특별 대출 3,437억 원,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4,552억 원 등 금융지원(이행)
 - 납부·징수유예 1,113억 원 등 세제지원(이행)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40억 원 등 고용안정 지원(이행)
- **간접적 손실인 위약금 및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대안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 보상액 5,017억 원은 기업 피해신고액 9,657억 원 대비 53.8%, 정부의 피해 확인액 7,862억 원 대비 65.3% 수준으로 여전히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피해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기업들은 특히 유동자산 부분 관련, 정부 확인액 1,917억 원 대비 정부 보상액이 1,214억 원이므로 차액 703억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외에도 피해기업들은 △정부확인 피해금액 전액 지원 △피해 전액지원 특별법 제정 △기타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통일부는 향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상황, 정부의 재정 여건, 경협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피해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기업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정부가 확인한 기업의 피해 금액만큼은 전액 보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열	02) 788-4557
관련 부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	02) 2100-5688

■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기업 피해 보상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보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통일부	정부는 5.24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에 대해 그간 3차례에 걸친 특별대출과 1차례의 긴급운영자금 등 지원,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또한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임

【표 1】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현황

구 분	총 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지원종류		대출(1차)	대출(2차)	무상지원	대출(3차)
금 액	220억	66억	48억	4억	102억
대상기업	40개사	26개사	15개사	40개사	38개사

- 다만, 금강산 관광과 달리 5.24조치로 인한 경제손실은 손실의 범위 또는 산정기준 등은 설정하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5.24조치에 따른 우리 측 피해현황은 경협기업 43개사의 투자비용이 약 840억 원이며, 교역기업이 1,000여개사로써 이 중 미회수분이 피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 밖에도 소득 및 고용감소와 같은 간접효과, 향후 기대수익 등이 있을 것이나, 객관적으로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함
- 그러나 5.24조치 이후 경협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은 보상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긴급운영경비 지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피해 기업들과도 소통하면서 정책적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여부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에 대해 그간 3차례에 걸친 특별대출과 1차례의 긴급운영자금 등 지원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등을 실시한 바 있음(이행)
-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 (계획수립중)

■ 5.24조치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여부

- 특별대출, 긴급운영경비 지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행)
- 피해 기업들과도 소통하면서 정책적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계획수립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현대아산, 협력회사, 강원도 고성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현대아산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 관광중단이후 2015년 6월까지 매출손실 8,717억 원, 누적 영업 손실이 964억 원으로 추정됨. 또한 임직원들도 중단전 1,084명에서 262명으로 76%가 감축되었고, 708억 유상증자 및 임직원 급여 10%~50% 반납 및 유보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함
 - 협력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시설투자에 집중된 협력회사의 매출손실은 2015년 6월까지 약 3,165억 원이며,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인 관계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해 받은 타격이 사실상 더 크다고 함
 - 고성군의 경우 관광중단으로 인해 재정악화, 실업자 증가와 인구감소, 노인/아동 등 보호대상 주민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표 2】 고성군 피해 현황

구 분	관광객 감소	휴폐업 증가	인구감소	경제손실액
고 성 군	220만명 (32%감소)	400여곳 (10% 감소)	4,000여명 (13%감소)	3,600억 (월평균 38억)

출처 : 고성군(서울신문, 2015.7.7)

- 그동안 정부는 금강산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과 지자체의 손실 규모뿐만 아니라, 5.24조치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기업 피해 보상 정도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됨
-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5.24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의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피해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열	02) 788-4557
관련 부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	02) 2100-5688

통일준비위원회의 국정감사 처리결과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하여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라고 함)의 업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통일부	통준위의 여론수렴기구, 특히 ‘국회와의 협의체’와 ‘통일교육자문단’은 2016년도 들어 1건도 열리지 않았는데,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회와의 대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통일부	통준위의 ‘국민공감대 세미나’, ‘통일한국 미래상 공론화 세미나’, ‘전문가 공개 세미나’ 등은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는 단 한건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것
통일부	통준위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중 민주평통 운영위원 또는 상임위원, 통일부 자문위원과의 겸직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것
통일부	통준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통준위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통일부	통준위의 방만한 운영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통일부	통준위는 통일부·통일연구원·민주평통 등 여러 기관과 업무가 중복을 방지하고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조정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통준위는 출범이후 2016년 12월말까지 총 33회의 여론수렴회의를 개최하였음
 - 통일준비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필수조건임으로 적절한 계기에 국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 통준위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민공감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2016년 국민공감대 활동(‘국민공감대 세미나’ 등)은 2016년 총 15회(상반기 7회, 하반기 8회) 개최하였음(참고로 ’14년 4회, ’15년 16회)
 - 통일부, 민주평통 등과 협조하여 자문위원 신규 위촉 시 겸직을 줄이도록 하겠음
 - 통일부 ’16년 민간위원 위촉 시 통준위 위원의 경우 위촉 자제 및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였음
 - 앞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만료 시(’15.7.1~’17.6.30) 겸직을 최소화 하거나 줄이도록 협력할 계획
 - 2015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에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음(’15년 수의 9건(1.8



- 억 원) 공개 5건(3.2억 원), '16년 수의 8건(1.1억 원), 공개 6건(3.7억 원) 등임)
-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
 - 통준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 통일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일준비위와의 관련한 긴밀한 협업관계 차원에서,
 - 통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통준위는 민·관 협업, 통일준비 정책과제 발굴·연구 등의 본연의 임무에 역점을 두어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 필요시 유관기관과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준위의 여론수렴기구 활성화와 국회와의 대화 등 협력 모색 여부
 - 2016년 12월말까지 총 33회의 여론수렴회의를 개최(이행)
 - 국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계획(계획수립중)
- 통준위의 '국민공감대 세미나', '통일한국 미래상 공론화 세미나', '전문가 공개 세미나' 활성화 여부
 - 2016년 국민공감대 활동('국민공감대 세미나' 등)은 2016년 총 15회(상반기 7회, 하반기 8회) 개최(이행)
- 통준위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겸직을 최소화 여부
 - 통일부 '16년 민간위원 위촉 시 통준위위원의 경우 위촉 자체 및 최소화를 위해 협력(이행)
 -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만료 시('15.7.1~'17.6.30) 겸직을 최소화 하거나 줄이도록 협력할 계획(계획수립중)
- 통준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통준위 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는 대책 마련 여부
 - 2016년 수의계약 8건(1.1억 원), 공개입찰 6건(3.7억 원)으로 공개입찰 확대(이행)
- 통준위의 방만한 운영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여부
 - 통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이행 중)
- 통준위의 통일부·통일연구원·민주평통 등 여러 기관과 업무 중복 방지 여부
 - 통준위가 통일준비 정책과제 발굴·연구 등의 본연의 임무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수렴 등 통준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통준위 초기 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상태임(2016년도 전체회의 개최 1회, 국민공감대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횟수가 각각 1회에 그침)
 - 특히 통일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국회와의 협의체 운영은 2015년과 2016년 국정감사에서 모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음
 - 통준위 출범 때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통일부와 민주평통과의 업무중복과 위원 겸직문제는 현재까지 시정 및 처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3. 개선방안

- 현재 통준위는 지난 7월 초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결정되었고, 향후 두 달 간 청산작업을 진행 중임
 - 통준위는 설립시기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범(汎)정부 및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통준위에 대한 청산작업과 함께 미래 통일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과거 독일통일준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독일 통일자문위원회(Forschungsbeirat fue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이하 자문위원회)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자문위원회는 전독문제성(省)¹⁾ 소속 위원회로 서독 내각의 결정에 따라 1952년 설립되어 1975년까지 활동하면서 민간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었음
 - 독일도 민간 자문위원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중시하였으나, 두 기구를 하나의 위원회로 합치기보다는 정부측에는 ‘독일통일문제 정부부처 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
 - 독일 자문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기구와의 중복 논란

1)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이며, 1969년 10월 ‘내독관계성’으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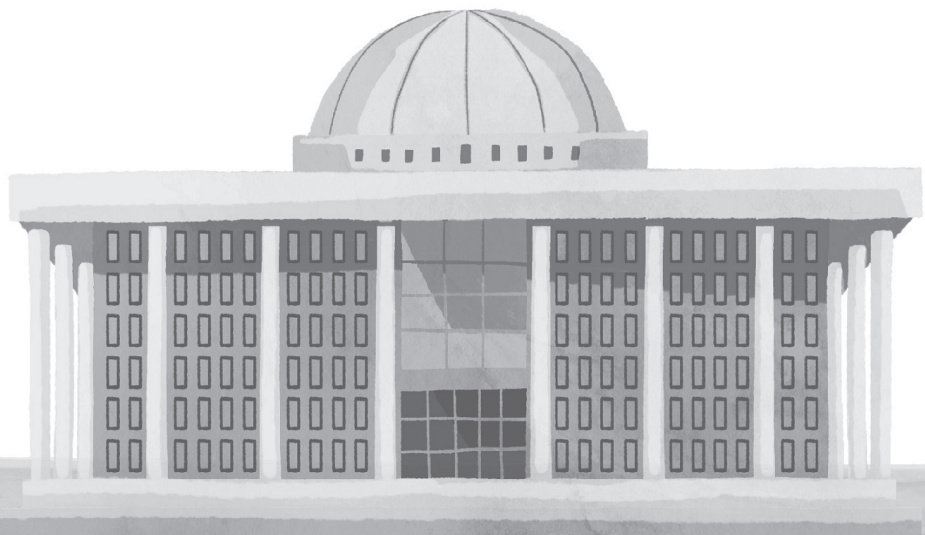
- 을 피하고자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두 가지로 한정하였음
- 첫째, 동독의 경제 분야별 국민경제 현황과,
 - 둘째, 통일시 예상되는 각 분야별 긴급대책으로 한정함
- 독일 자문위원회가 통일시 예상되는 특정 분야에 연구를 집중한 반면 한국의 통준위의 정책연구 및 세미나 주제는 대체로 통일관련 담론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함
- 따라서 통준위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그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준비 기구만이 할 수 있는 연구주제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독일 자문위원회처럼 “통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이승열	02) 788-4557
관련 부처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기획협력	-	02) 721-9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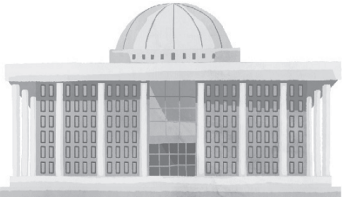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행정안전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행정안전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부위원회의 운영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정부위원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554개 정부위원회 중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4월 5일, 운영실적 부진 위원회 등을 정비하기 위한 '17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음
 - 매년 부실위원회 시정·보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 향후 추진계획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음
 - 정비 관련 위원회별 입법계획 점검('17.4~5월)



- 정비 추진 상황 주기적 점검 및 독려 등(17년)
- 회의실적 등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분기별)
-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통해 8월말 위원회보고서 발간 예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
 -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이행)
 - 부실위원회 시정·보완(이행)
-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별 입법계획 점검여부
 - 각 위원회 설치법령 검토(이행 중)
 - 정비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이행 중)
 - 위원회 운영실적 점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위원회 정비계획의 수립 및 통보는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실제 이에 따르는 입법 계획은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 입법계획의 점검은 1차적으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 행정기관내 정부위원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위원회총량제’ 등의 신설을 고려하는 한편, 기관운영평가에 위원회운영 및 정비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위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위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원 임명·위촉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 위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회의출석, 회의록 작성, 심의·의결 건수 등 세부 성과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부실위원회의 명확한 정의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위원회 일제조사의 경우 매년 6월에 실시하여 그 결과가 8월말 또는 9월초에 공개되는데 조사시기를 앞당겨 매년 상반기에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박영원	02) 788-4561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	-	02) 2100-4453

■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제공·민원신청 등 사이트가 총 21개 포털에 달하고 있으므로,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는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전자정부 3.0시대에 걸맞는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복지부, 워크넷 등 타 부처 시스템까지 연계·통합하는 사업 추진 중
 - 대한민국정보포털, 맞춤형혜택안내, 민원24의 3개 시스템 우선 통합('16.6~12월)
 - 타 기관 22종 행정서비스 시범연계 완료('16.10월~'17.3월)

참고

■ 타 부처 주요 서비스 단계적 통합·연계 추진

- '17년 85종, '18년 85종, '19년 90종 서비스 연계(완료시 이용점유율 96.7%)
- '20년부터 정보의 특수성·전문성이 필요한 포털은 연계, 일반포털은 통합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대국민 정보운영창구 통합방안 마련 여부

- 행안부 소관 3개 시스템(민원 24시,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를 통합하고, 타 기관 22종(소득확인증명,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의 서비스를 연계함(이행)
- 2017년~2019년에 걸쳐 타 기관의 주요 서비스 총 260종('17년 85종, '18년 85종, '19년 90종)를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부서비스·민원·정책정보를 정부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정부24」, gov.kr)로 통합 또는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 적용으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함
 - 그리고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나 사이트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국세납부



나 건강보험 등 특수성·전문성이 필요한 포털은 연계방식으로, 일반적인 포털은 통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대국민 서비스 온라인창구가 각 기관별로 운영되면 국민불편 및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서비스 및 자원의 중복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국민 정보운영창구의 통합화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완전한 일원화를 위해서는 통합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서비스나 정책정보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연계방식이 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각 서비스나 정보별로 그 성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정부대표 홈페이지(gov.uk)를 통해 서비스 안내·제공과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benefits gov), 캐나다(service canada), 호주(centerlink) 등의 경우는 정부 대표 홈페이지와 분야별 창구를 별도로 유지하는 분리형을 취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조사실	안전행정팀	김현정	02) 788-4566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	통합플랫폼구축팀	-	02) 2100-4191

■ 부처별 PC영상회의 개선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부처별 PC영상회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정부업무평가 정부3.0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 부처별 PC 영상회의의 실적을 목표치 부여가 아닌 근본적인 부처간 소통방식이 될 수 있는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지자체 간 업무협약의 시 출장지양 및 PC영상회의의 이용 독려 차원 부처별 이용건수를 평가지표로 선정·운영('15년, '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14.4월), 지자체('15년.1월) 시행 <div data-bbox="382 599 1229 1089"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PC영상회의 개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총 77,676건 개설, 472,363명 참여 ■ '16년 총 177,955건 개설, 890,576명 참여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PC영상회의 개설 현황 (추정치)</caption> <thead> <tr> <th>월</th> <th>2015년 (개설건수)</th> <th>2016년 (개설건수)</th> </tr> </thead> <tbody> <tr><td>1월</td><td>2,000</td><td>2,000</td></tr> <tr><td>2월</td><td>2,000</td><td>2,000</td></tr> <tr><td>3월</td><td>3,000</td><td>4,000</td></tr> <tr><td>4월</td><td>3,000</td><td>4,000</td></tr> <tr><td>5월</td><td>3,000</td><td>6,000</td></tr> <tr><td>6월</td><td>5,000</td><td>11,000</td></tr> <tr><td>7월</td><td>5,000</td><td>12,000</td></tr> <tr><td>8월</td><td>7,000</td><td>19,000</td></tr> <tr><td>9월</td><td>10,000</td><td>23,000</td></tr> <tr><td>10월</td><td>14,000</td><td>32,000</td></tr> <tr><td>11월</td><td>14,000</td><td>38,000</td></tr> <tr><td>12월</td><td>13,000</td><td>26,000</td></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건수 위주가 아닌 PC영상회의로 소통한 경험을 가진 사용자층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파악하는 정량지표와 부처간 창의적인 활용 우수사례 등 정성지표 동시평가 예정('17년) 	월	2015년 (개설건수)	2016년 (개설건수)	1월	2,000	2,000	2월	2,000	2,000	3월	3,000	4,000	4월	3,000	4,000	5월	3,000	6,000	6월	5,000	11,000	7월	5,000	12,000	8월	7,000	19,000	9월	10,000	23,000	10월	14,000	32,000	11월	14,000	38,000	12월	13,000	26,000
월	2015년 (개설건수)	2016년 (개설건수)																																						
1월	2,000	2,000																																						
2월	2,000	2,000																																						
3월	3,000	4,000																																						
4월	3,000	4,000																																						
5월	3,000	6,000																																						
6월	5,000	11,000																																						
7월	5,000	12,000																																						
8월	7,000	19,000																																						
9월	10,000	23,000																																						
10월	14,000	32,000																																						
11월	14,000	38,000																																						
12월	13,000	26,000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 항목의 PC영상회의 평가지표 개발('17.4~5월) ○ 부처별 평가지표 설명('17.5월) ○ 정부업무평가 결과 제출('17.12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처별 PC영상회의가 실적평가가 아닌 근본적인 부처간 소통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
 - 정부업무평가 항목의 PC영상회의 평가지표(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개발(이행 중)
 - 부처별 평가지표 설명(계획중)
 - 정부업무평가 결과 제출(계획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부처별 PC영상회의가 평가를 위한 형식적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 PC영상회의 평가에 대해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PC영상회의 참여정도(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우수 활용사례(정성평가)도 평가하여 부처간 영상회의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임
- 그동안의 정량평가가 건수 위주의 영상회의를 부추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적인 필요에 따른 내실있는 영상회의 사용이 될수 있도록 정성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하지만 PC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라는 정성평가도 평가의 하나이므로 실적을 위한 형식적 이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봄
- 부처 공무원들이 PC영상회의를 잘 사용하지 않는 주요요인 중 하나는, 영상회의를 열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접속이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또한 컴퓨터 기기의 성능이 낮아 원활한 영상회의의 진행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 보여짐
- 따라서 PC영상회의의 접속 및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및 통신 기기의 기능개선 및 확충을 도모하고 PC영상회의 사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영상회의 이용자의 편의성 및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조사실	안전행정팀	김현정	02) 788-4566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창조정부조직실	협업행정과	-	02) 2100-3439



■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하향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개인정보가 1만건 이하 유출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및 유출사고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신고기준 검토 중
향후추진계획	신고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검토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의 하향 방안 마련 여부
 -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를 확대(1만명 이상 → 1천명 이상)하는 시행령 개정추진(이행 중)
 - (추진상황 및 계획) 관련 입법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개정안 마련('17.7.) → 입법예고('17.7.17) → 규제·입법심사('17.7~9월 예정) → 시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는 입법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 시의 신고범위를 현행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 17일 입법예고하였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유출규모가 1만건 이상이면 행정자치부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34조)
- 유사입법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1건이라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27조의3)
-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관련 사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내용(기준)
미국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일반법은 없음 ※ 다만, 의료정보법(HITECH Act)은 500명 이상 환자정보 유출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EU	「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개인정보 유출 시 부당한 지체없이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GDPR 제33조)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별도 기준 없음

※ 자료 :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을 하향하여 유출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이로 인해 새롭게 유출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파악이나 의견수렴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새롭게 유출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나 유형 파악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조사실	안전행정팀	김현정	02) 788-4566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 2100-4100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입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국회와 논의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16.6월)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 도모 ○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비식별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16.8월)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의 발전, 데이터 증가 등에 따라 과거 비식별된 정보가 현재에는 식별정보가 될 수 있음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비식별 조치하면 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의 범위 결정과 동일한 문제임 - 우선,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화하는 방안 마련 여부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48건) 및 법적·기술적 심화 교육(20회) 실시(이행)
 - 정보기술의 발전 및 데이터 증가로 과거 비식별 정보가 현재는 식별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필요(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16년 6월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홍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
-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정보이용의 사회적 유용성 및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계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정보분석기술의 발전 및 데이터의 증가로 재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조치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시민단체 및 일부 학계)도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참고로, 최근에 제정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서는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는데, 가명처리나 익명가공은 모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EU의 가명처리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는데 반해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차이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조사실	안전행정팀	김현정	02) 788-4566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 2100-4100

■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인사권을 독립하고, 전문 의회직렬을 신설하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지원 강화로써 유급 전문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의 의정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권 독립, 보좌직원 도입 등에 대해 지방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16.10월, '17.3월) <설문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권 독립 및 보좌직원 도입은 부작용이 많아 현실적으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의견 - 소규모 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적체, 의장 인사권 남용, 보좌직원의 개인 비서화 등으로 반대 입장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입법논의 상황, 전문가 의견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방자치법」개정 지속 검토('17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직원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조사**
 - 2016년 전국 지방의회 담당관 워크숍에서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설문 및 의견 수렴(대안 이행)
- **지방의회 의정지원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의회직렬신설, 보좌직원 확보 등 관련 법률의 개정 검토**
 -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직원 도입 등의 경우 지방의회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의회직렬 신설, 의원의 보좌직원 확보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2016년 10월 지방의회 담당관 130명(시도 32명, 시군구 98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항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 보좌관제 도입의 범위, 보좌관제 도입시 고려사항 등임
 - 그 결과,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보좌직원 도입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많게 나왔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며, 이들이 지방의회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회직렬 신설,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이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선거의회과	-	02) 2100-3859

도로명주소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제도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의 난립 또는 누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 9. 2.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
행정자치부	국민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객관적 연구(해외 사례 분석, 심층분석 등)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재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첫째,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의 난립 또는 누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 9. 2.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모두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화에 따른 누락 문제 해소 ○ 다만, 해당 도로명 부여 시 종전의 주소를 바꿔야 하는 주소사용자가 존재하므로 서면동의 절차는 유지('17.3.2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공포)

□ 둘째, 객관적 연구(해외 사례 분석, 심층분석 등)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주소사용 실태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가구방식 주소는 외국인이 위치를 찾기가 불편하여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남(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 발굴·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시행 중임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사용 만족도 등 조사(3~9월) ○ 국민불편사항 발굴 및 정책반영(10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도로명 부여 시 도로명의 난립 또는 누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7.3.27.)을 개정·시행(이행)
- 객관적 연구(해외사례, 심층분석)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재검토 필요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일본)의 사례를 조사함(이행)
 -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 발굴·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시행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국정감사에서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시 도로명의 난립 또는 누락 문제와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를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17.3.27)함으로써 시정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물군 내 도로명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건물군 내 도로의 도로명 부여’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건물군 안의 도로 또는 건물군에 진입하거나 건물군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에 도로명 부여’로 수정하여 누락이 없도록 확대함
 - 그리고 건물군 내 도로명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절차’를 ‘도로명 변경절차를 준용’하던 것에 조문을 구체화하여 난립이 없도록 개정함
- 둘째, 객관적 연구(해외사례, 심층분석)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재검토하는 지적에 대한 평가임
-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일본을 살펴봄. 일본 역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1960년부터 주소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현재 가구방식(70%), 지번(30%)을 혼용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구방식 주소는 외국인이 위치를 찾기가 불편하여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고,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되어, 이제 3년째를 맞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필요함
- 행정자치부는 국감시정·처리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 발굴·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 등(3~9월)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사항 발굴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제시함
-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도로명주소의 개선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주소정책과	-	02) 2100-3666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광고물의 약 8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 불법광고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제재 또는 양성화)을 모색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보고함('17.2.13.)

✓ 도로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주요내용

- **고속국도변 지자체 홍보용 불법광고물**
 - 지자체별 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 시·도 합동점검 실시 및 분기별 점검
 - 철거에 미온적인 지자체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감사, 기관경고 및 관계자 처벌 조치
- **국도·지방도 광고물 및 주파수 광고물**
 - 지역 농·특산물과 상업광고 혼용 광고물, 교통안전 저해 광고물 즉시 정비
 -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주파수 광고물 정비
- **도로변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개선 검토**
 - 도로변 광고물 관리체계, 도로경계선과의 거리, 크기, 안전관리 기준 등
- **인센티브 및 패널리티 부여**
 - 우수지자체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우선 선정 및 포상 실시, 미온적 지자체 배제



- 또한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함
(’17.3.2.~3.3, 전북 전주, 250여명 참석)
- 향후 행정자치부가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점검(분기별)하고,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17.12월)하는 것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해결방안(제재 또는 양성화) 모색
 -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달함(이행)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미온적인 지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이행 중)
 -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해결방안으로써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 모색(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정비실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에 40기를 정비함(지주이용간판 19개, 주파수광고물 21개)
 -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을 올해 3월에 개최했고, 시·도관계자회의 6월 12일에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를 독려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보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도로변 옥외광고물의 대다수가 불법인데, 지자체가 보다 적법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없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직접적



으로 규제 및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정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들이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상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규제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생활공간정책과	-	02) 2100-4375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생활공감지도서비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중에서 민간 혹은 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것은 시정할 것
 - 특히, 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¹⁾는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시정이 필요함.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 지 검토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내용 충실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1) 안전귀가서비스는 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 등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며, 생활안전 시설물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안전 서비스(앱)이다.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항목 개편 등 서비스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한 개편 방안 마련('16.10.28.) -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웹/앱), 생활정보지도(웹), 생활불편신고(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민간 및 타 기관과의 중복 서비스로 지적된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17.1.1. 폐지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 방안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컨설팅 신청 및 진행 중 - 컨설팅 결과를 향후 생활공감지도서비스 개선 및 운영에 활용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생활공감서비스에서 민간 혹은 타 기관과의 유사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
 - 국감에서 지적된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17.1.1. 폐지(이행)
 - 생활공감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히 할 것(이행 중)
 - 국가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와의 유사 및 중복성 조사 후 개선안 마련(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감에서 민간과 타 기관과의 유사서비스로 지적된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1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
 - 이에 따라 현재 생활공감지도서비스(www.gmap.go.kr)에서는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 생활정보지도, 생활불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서비스 내용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국민이 생활속 불편함(쓰레기 방치, 불법주정차 등)을 사진·동영상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후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앱)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법제도 안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정보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웹, 앱)
생활정보지도	국민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공공정보를 업무담당자가 지도기반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분야를 지도 위에 직접 표시하여 공유하는 커뮤니티형 서비스(웹)

- 생활공감지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의 내실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17년 12월말까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구)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지도서비스와 구)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지도 간에 유사 및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사한 지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지역정보지원과	-	02) 2100-4025



■ 접경지역 발전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접경지역 발전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심의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행정자치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안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 보완, 예산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첫째,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심의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청에 따라, 접경지역 관련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16.12.2.)

✓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 위원 : 부처 및 지자체 고위공무원
- 기능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안사항 처리

- 둘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안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에 따라, 접경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6.12.2.)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함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 내실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중('16.8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심의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정책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6.12.2.)하고, '17년 6월 3일부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이행)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안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 보완, 예산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접경 접경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6.12.2.)하여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이행)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 내실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6.12.2.)하고, '17년 6월 3일부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7.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둔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 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안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 보완 및 기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6.12.2.)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함
- 둘째, 국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계획의 내실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16년 9월부터). 올해 안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고, 사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통해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과	-	02) 2100-436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해마다 규모와 인원이 줄고 내용도 환경정비 등 단순 일자리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생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과 내용을 검토·보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도개선(안) 마련('16.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목표제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확대 - 공동직업장 육성 및 마을기업·지역기업 연계 일자리 사업 점진적 확대 - 근로의욕 고취, 기술습득 및 민간취업 연계를 강화 등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 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킴 보완('17.12월) ○ 청년층 참여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개정 건의('17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과 내용을 검토·보완할 것
 -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 확보방안 마련(이행 중)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일환으로, 지역특산물 및 폐자원의 상품화, 자연·문화 체험상품개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음
 -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비중 : ('16년) 20% → ('17년) 25% → ('18년) 30%
 -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및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민간부문 일자리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숙련취업교육 강화(월 25시간 → 30시간), 취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킴
 - 전통기술 전수, 상품개발 지원, 창업노하우 전수 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성장·지원할 예정임
 - 청년우선선발(5%이상), 일자리발굴단운영 등 청년층 참여의 지속 확대시킴
- 다음은, 사업의 생산성 강화 및 참여층 확대 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음
-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6월, 3,000명이상) 및 시행(7~10월, 4개월)할 예정임
 - '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남
 - '17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과분석('17.6~7월)
 -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유형개선(안)마련('17.8~9월)
 - 시·도 의견수렴후 지침개정('17.10~12월)
-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올해 중점 추진방향은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 ②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발굴·정립, ③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 등임. 이를 통해서 보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대상(연령별)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일자리사업의 성과측정시 참여자수, 임금 등 단순실적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및 자활여부 등을 양적 및 질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하혜영	02) 788-473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지역공동체과	-	02) 2100-4346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2013년 중앙·지방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 지방재정 확충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세 세원관리 및 체납징수 강화와 납세편의 제공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이 대폭 상승되었음
 -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지방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음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인상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을 지원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세 징수율 상상을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행)
 - 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 보편화(이행)
- 「지방세징수법」 제정 여부
 -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행)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검토 여부
 -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인상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중(계획 수립 중)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추진 중(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지방세정시스템(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납부를 보편화한 것은 납세자의 편리성과 편익을 높이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구축한 위택스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세부적이고 단순한 기능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하드웨어 장비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016년 12월에 제정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징수법」은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한 법률로, 그동안 지방세가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징수법」은 기존의 「지방세기본법」 중에서 징수·채납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지방세 징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법률은 아니라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



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위택스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위택스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위택스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보·지원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편리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장비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가 징수되어 가는 흐름을 고려하면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 방식별로 징수권자·납부의무자·징수물건 등을 통일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세무조사·조세 부과·조세 체납·조세 징수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에서 관련내용을 총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와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16%, 20%, 21% 등으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인상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과세하는 선택과세 제도를 활용한다는 의의가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는 천연가스 인수(생산)기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등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	02) 2100-3605



지방회계직공무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지방회계직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지방회계직공무원들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²⁾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KLID ACADEMY 사이트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활용할 예정임(2017년 4월)
 - 2017년 온·오프라인 전체 교육수강 계획 목표인원은 20,000명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일반지출 과정을 개설하고(2017년 4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회계길라잡이 과정을 개설하고(2017년 7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예산길라잡이 과정을 개설할 예정임(2018년 1월)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는 2007년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회계와 2008년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수용해 예산·계약·지출·결산·성과평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임.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운영하던 재정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중복투자방지 및 재정업무 표준화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각각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 2017년 1월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만명(1일 1,5만명)이 1일 평균 48,000건, 8,200억원을 지출하는 대규모 시스템임(김경태, 『2017년 지방재정관리 운용방향』, 『지방재정』, 통권31호, 2017, p.34).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회계직공무원의 e호조 교육 강화 여부

- KLID ACADEMY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일반지출 과정 개설(이행)
- KLID ACADEMY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회계길라잡이 과정 개설(이행)
- KLID ACADEMY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예산길라잡이 과정을 2018년 1월 개설 예정 (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활용한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는 지방회계직공무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아서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집합교육이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그동안, 지방회계직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 왔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다만, 사이버교육이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화면을 보면서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직접 접속·클릭하여 사용법을 익히는 방식이 아니므로, 실습부재에 따른 교육효과 저하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지출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등을 기준으로 지출품의목록, 지출품의등록, 품의관리번호변경, 지출결산, 조기집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만으로는 교육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사이버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교육과 연계하여 집합교육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각 시·도 산하 인재개발원 및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습을 통한 능력배양이 가능할 것임
 - 더 많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7년 7월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일반지출 과정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회계길라잡이 과정을 개설하였고, 2018년 1월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예산길라잡이 과정을 개설할 예정인데, 향후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세부내용에 대한 교육과정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민간 교육분야로부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노하우를 습득·적용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	02) 2100-3529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과오납금이 총 5,481억원 약 66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양질의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국세청 등 56개 기관, 총 287종의 과세 자료를 구축하였음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2017년 5~6월)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한 과오납 감소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할 예정임(2017년 7월)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행정소송 자료를 공유할 예정임(2017년 12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 조치 수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행)
--



- 국세청 등 56개 기관, 총 287종의 과세자료 구축(이행)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완료(이행)

- 지자체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한 지방세 과오납 감소대책을 7월중 시달 예정(이행 중)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국 행정소송 자료공유를 12월 실시 예정(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에 168종, 2015년에 221종, 2016년에 287종의 과세자료를 구축한 것은, 지방세 부과와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2017년에 총 3회에 걸쳐 40명에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것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오납 사례를 조사하였고, 과오납 유형 중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여 7월 중에 과오납 감소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할 준비 중이며, 12월까지 지방세와 관련한 전국의 행정소송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모아놓는 허브(HUB) 역할을 하면서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결산 기준으로 93.6%³⁾의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1.3%⁴⁾에 불과하여 징수율이 낮고,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서 징수 및 체납관리가 어렵기 때문임

3)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 통계연감』, 2016, p.11.

4)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2016, p.31.



3. 개선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빈번한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납세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지방세정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한 환급금 조회·환급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세 해석·운영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경험을 활용해 세외수입 자료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축적한 세외수입 자료를 기반으로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및 과오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정책과	-	02) 2100-3648 02) 2100-3603



■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운영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더라도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로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교부하고, 인센티브 규모가 작은 것을 개선하며, 인센티브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 선발시 위원의 자격요건·선발기준·선발과정 등을 명료화하고, 이를 공개하며,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국가시책특별교부세에서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세까지 확대하고, 심사기준과 과정을 체계화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한시적으로(2015~2019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⁵⁾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게는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계속해서 단순화해 왔음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향후 반영비율 확대 및 자체노력 항목 신설時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5) 2017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으로, 이들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함. 이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부터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및 기준을 심의·확정하고, 사업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게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 여부**
 -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게는 분권교부세 보전금을 교부하지 않음(미이행)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 여부**
 - 거의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측정항목을 줄이고 있음(이행)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개선 여부**
 -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겠음(미이행)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이행)
 -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공개 및 심의대상 확대(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만 분권교부세 보전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으면서도 분권교부세로부터 이양된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재정충격이 크기 때문임
 -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분권교부세로부터 이양된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집행하여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다 재정적 충격이 작다고 볼 수 있음. 즉, 한정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이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중에서 “기초수요액” 산정에 필요한 “측정항목”을 2002년에 31개에서 2017년에 16개로 감소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고,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단위비용·보정계수), 보정수요액(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통합지방자치단체 수요 등), 수요 자체노력”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보통세 9종), 보정수입액(경상세외수입·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수요 자체노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복잡한 구조임
- 향후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인센티브 항목을 독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임
-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선발기준·선발과정 등의 명료화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개선방안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산정방식 중 기본적인 내용은 「지방교부세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통합하며, 감액재원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선발기준·선발과정 등을 공개하고,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	02) 2100-355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개선 방안 모색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기능중복이나 방만경영상황을 검토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중복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함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추가 및 증액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에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여부
 - 16개 출자·출연기관을 6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 완료(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방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16개 출자·출연기관을 6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지방공사로 통폐합한 것은⁶⁾ 유사중복기관을 줄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아직도 소규모 출자·출연기관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 2016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개정하였고, 2016년 11월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추가 출자와 증액 출연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반해, 출자·출연기관은 내부(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객관적·중립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

6) ①인천경제통상진흥원+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②인천도시공사관광사업부+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 → 인천관광공사, ③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 → 광주전남연구원, ④빛고을노인복지재단+광주복지재단 → 광주복지재단, ⑤경북테크노파크+그린카부품진흥원+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 경북테크노파크, ⑥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산업경제진흥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⑦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 인천문화재단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동시에 평가도 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관대화가 발생하거나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 현재 649개 출자·출연기관에서 32,67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보다 숫자가 더 많고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실정이므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 출자기관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⁷⁾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기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의무화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가 전(全)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도록 시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한 평가기준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	02) 2100-3550

7) 장환준,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지방공기업』, 통권제15호, 2016, p.23.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공시 수준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고도화 사업을 위탁하여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임
 -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이란, 지방공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된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하고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시하는 항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까지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의 계획을 수립(2017년 1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을 위탁(2월 10일), 클린아이에 공시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안)을 마련(2월~3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3월~4월), 의견조회 후 공시항목을 확정(6월)하였고, 공시항목 기능을 개선하고(12월), 대국민 공개를 실시할 예정임(2018년 4월)
 - 서버가 한 대이면 다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버를 양 쪽으로 분산하는 “서버 이중화”를 통해 서비스의 다운을 방지하고 서비스 로드를 분산시킬 예정이고, 이를 위해 2018년 예산확보가 필수적임(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중)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 수행 여부

-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 위탁(이행)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민 설문조사 실시 및 공시항목 확정(이행)
- 클린아이 시스템 개선 중(이행 중)
- 대국민 공개 예정(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초에 클린아이 고도화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에 확보한 5억원의 예산으로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2018년에 필요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2017년 현재 지방공기업은 전국적으로 402개이고, 2015년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원⁸⁾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채 28조원보다 규모가 더 크며, 지방공기업의 종류가 지

8)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2016.7.29., pp.240, 256. 2016년말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68조원으로 집계되었음(김태경,



방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등으로 복잡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 수준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효과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임

○ 현재 클린아이에 통합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 항목은 67종으로, 알리오의 통합공시 경영정보 항목 40종(2017년 현재)과 비교해 볼 때 공개자료의 양이 적지 않음

－ 일반현황, 인사 및 조직현황, 예산현황, 인건비현황, 사업성과·재무현황, 부채현황, 복리후생현황, 감사결과, 경영평가·혁신, 경영진단, 규정, 보고서, 공고·입찰·채용, 노사관계현황, 기타 경영공시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음

○ 하지만, 원시자료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일반국민 등의 이해 및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알리오의 공시 형태를 참고하여 클린아이의 공시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클린아이에서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비”를 검색할 경우, 유가족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보육비 및 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사내복지기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중에서 선택하여 클릭해야 해당 지방공기업의 해당 세부내역을 볼 수 있는데, 알리오에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검색할 경우, 복리후생비를 클릭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세부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클린아이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공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클린아이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가 없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어 있는데, 클린아이 고도화 사업 완료 후에는 클린아이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를 클린아이에서 총괄하면서, “지방재정365”와 연동하여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 등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68조 1,000억」, 『파이낸셜뉴스』, 2017년 7월 5일자.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	-	02) 2100-3577

■ 담배세수 구조 재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담배세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국세는 증가한 반면 지방세가 감소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담배세수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 증대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수 배분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담배세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2017년 3월 6일에 재정분권 전반에 대한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음
 - 담배세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담배세수 구조 개편 조치 여부
 -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구축(이행)
 - 담배세수 구조 개편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예정(미이행)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불형평성 개선 여부
 - 특별한 내용 없음(미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국세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가 감소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지방세 징수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담배소비세는 시세의 9.8%, 군세의 13.4%를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재정자립도가 39.2%인 시와 18.8%인 군의 주요한 지방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현재 담배에는 개별소비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배세수 구조를 개편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별소비세(국세) 폐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문제는 담배소비세가 특·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모든 조세가 세수편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9)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7, p.271.



- 지방세는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기에 앞서 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지역간 불형평의 문제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담배세수 구조의 개편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안이고 기획재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¹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기존에 담배소비세의 50% 이었던 지방교육세 세율을 2015년부터 담배소비세의 43.99%로 인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해외의 담배 관련 조세의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개별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각기 다르게 부과하고 있음¹¹⁾
 -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비중도 각기 달라서, 미국 43.00%, 일본 64.50%, 우리나라 73.70%, 독일 76.61%, 프랑스 81.09%, 영국 87.3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	02) 2100-3609

10) 박경담, 「김동연, 담배 개별소비세, 유지될 필요 있어」,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5일자.

11) 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p.24-47.



■ 담배제조사의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 대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담배제조사의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와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담배가격 인상 당시 담배제조사에 대한 조세 인상차익 7,938억여원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는 담배제조사의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세액 1,459억원의 추징을 완료하였음
 - － PM코리아에 2016. 12. 12 고지, 2017. 1. 12 납부하였고, BAT코리아에 2016. 11. 14 고지, 2016. 11. 30 납부하였음
 - 담배소비세 포탈(逋脫)에 따른 고발을 완료하였음
 - － PM코리아를 2016. 11. 17 검찰고발하였고(사천시장), BAT코리아를 2016. 12. 28 검찰고발하였음(양산시장)
 -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총 166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시, 군)가 2016년 7월에 세무조사팀을 구성하여 1차 세무조사(2016. 8. 8.~9. 2)와 2차 세무조사(2016. 9. 19.~11. 28)를 실시하였고, 2개의 지방자치단체 합동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총괄 조정·지원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담배회사의 불복청구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TF를 지원할 예정임(2017년 4월부터)



- 서울시를 중심으로 TF가 구성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들어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가 TF를 지원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에 대한 조치 수행 여부**
 - 탈루세액 1,459억원 추징 완료 및 담배소비세 포탈에 따른 고발 완료(이행)
 - 지방자치단체 합동 세무조사팀을 총괄 조정·지원 실시(이행)
- **향후 담배회사의 불복청구에 대응 여부**
 - 담배회사의 불복청구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TF 지원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담배소비세 인상차익 탈루세액 1,459억원을 추징 완료하였고 담배소비세 포탈에 따른 고발을 완료한 것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담배가격 인상 이전에 인상차익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놓지 못하여, 담배회사의 담배소비세 포탈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 1차 세무조사(2016. 8. 8.~9. 2)와 2차 세무조사(2016. 9. 19.~11. 28)를 실시할 때 행정자치부가 총괄 조정·지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담배회사의 불복청구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TF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복잡하고 금액이 큰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12) 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2016. 9. 22.



3. 개선방안

- 향후에는, 가격 등 인상시 행정상 사전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음
 - 가격 인상 전에 반출신고와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는 인상차익을 제조·판매사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조세불복 및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됨
 - 담배회사의 불복청구 및 소송에 대응하고 동시에 납세자권리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	02) 2100-3605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해결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조례감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에 일몰도래한 지방세 감면액 1.9조원 중에서 0.3조원을 일몰하였음(감면을 연장하지 않음)
 - 다만, 내진설계보강건축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개정), 전기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개정), 노후 경유승합차·화물차 폐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개정) 등 국민안전·건강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0.1조원을 제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 감면 신설 전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음
 - 2017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할 때 조세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개정)
 - 무분별한 조례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감면을 관리하고 있음
 - 감면조례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고, 조례감면액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있음
 - 10억원 이상 감면조례 신설시 조세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개정), 201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중에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축소(산업단지, 물류단지시행자) 및 종료(관광단지)하였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세 감면 정비 여부

- 2016년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액 1.9조원 중에서 0.3조원을 일몰(이행)

■ 지방세 감면 심사절차 강화 여부

- 감면예상액 100억원 이상인 감면 신설시 예비타당성평가 실시(이행)

■ 무분별한 조례감면 방지 대책 여부

- 감면조례총량제 운영, 조례감면액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이행)

- 10억원 이상 감면조례 신설시 타당성평가 실시(이행)

- 2016년 일몰도래 감면 중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축소·종료(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액 1.9조원 중에서 0.3조원을 감면하지 않고 일몰시킨 것은,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국세 비과세·감면율의 수준까지 낮추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¹³⁾
 - 2017년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려는 계획에 따라, 2009년말 기준으로 25.0%이었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음
 - 하지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 감면예상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 감면 신설시 조세전문연구기관에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 감면 신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감면조례총량제, 보통교부세 감면시 조례감면액을 반영, 감면조례 신설시 타당성조사 실시, 조례감면 축소·종료 등 지방세의 조례감면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에서 조례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1.1%¹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감면을 억제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13) 2015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5.5%이고 국세 비과세·감면율은 14.1%임

14) 나머지 98.9%가 법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임(류영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6, p.18).



3. 개선방안

□ 지방세 비과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재산의 주체가 국가 등이기만 하면 용도에 불문하고 지방세를 비과세해 오고 있는데,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¹⁶⁾

□ 지방세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하에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세의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일정규모 이하로 억제하는 지방세 감면 총량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	02) 2100-4089

15) 이동식,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83-88.

16) 이선화, 『2017년 일몰도래 지방세감면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pp.10-11.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관련한 다음 사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액이 총 74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고지서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요청에 대한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원활한 징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6년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7% 상승하였음
 - 2015년 9,62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였는데, 2016년에는 1조 3,71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여 징수액과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였음
 -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외국인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는 출입국사무소를 기존의 1개에서 총 16개로 확대함
 -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2017년 5~6월, 10~12월) 및 체납액 징수 지도·점검(6월, 12월)을 실시하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11월)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현재 국세가 20억원으로 하고 있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대신 위택스 시스템에 “은닉재산 신고 메뉴”를 개설하여 신고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11월)
- 2016년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대비 4.7% 상승하였음
 - 2015년 7,059억원의 체납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였는데, 2016년에는 9,555억원의 체납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징수액과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였음
- 2017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세외수입 간접강제제도를 실시할 예정(2017년 11월)이고,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임¹⁷⁾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체납 지방세 징수 확대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연초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이행)
 -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 확대(이행)
 -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 기간 및 체납액 징수 지도·점검 운영 중(이행 중)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이행 중)
 - 인터넷(위택스)으로 은닉재산 신고 실시 예정(대안 이행 중)
-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 확대를 위한 조치 수행 여부**
 - 연초에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이행)
 - 세외수입 간접강제제도 실시 및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정(이행 중)

17)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총 3종류(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개별업무시스템)로 분산·운영되고 있어서 업무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택스 시스템으로 신고자가 제보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메뉴 개설을 완료하도록 한 것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대안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고지서 도입에 대해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국세·관세 모두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세수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요건이 동일하게 5천만원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현행 체납액 5천만원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세외수입 징수가 늘어나도록 유인하는 방안과, 업무시스템 이외에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¹⁸⁾

18) 진희원, 『세외수입 실무행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61-65; 임규진, 「지방세외수입 법제도의 이해 및 개편 소개」, 『지방세포럼』, 통권 제32호, 2017, pp.77-78.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류영아	02) 788-4565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	02) 2100-3684 02) 2100-3646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공정성 확보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하며, 위원 명단과 지원 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사업 선정 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사업 선정을 위하여, 3개 분과 위원회 집중심사 후 교차심사¹⁹⁾ 실시하였음
 -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공익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명단도 공개할 계획임

19)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수정·보완
 - 구체적인 조치 결과나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함
 - 국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 임기 만료(2017년 11월 말) 후 공개하겠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회는 '위원 선정 방식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정부 측은 처리결과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다만, 행정자치부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16.04.)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은 국회 3명(20%), 민간단체 추천자 12명(80%), 총 15명으로 구성(法7조)되어 있으며, 추천비율 개선 등은 민간단체 등의 반발 우려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기적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 간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사업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바, 회의록 공개와 위원 구성의 공정성은 지원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행정자치부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완전 공개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취지에 어긋나 보임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다양성이 높은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다양하게 부여하고 위원 추천 비율도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선정 과정이 끝나는 즉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 관련 일체의 업무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일임하기 보다는 법률 또는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련 타법 사례

건축법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무형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정재환	02) 788-456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	02) 2100-3760

■ 자원봉사보험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자원봉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비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자원봉사보험제도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별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보험혜택을 상향 평준화하였고, 자원봉사보험의 지역별 통합을 넘어 분야별 통합을 추진하여 통합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²⁰⁾하였음
 - 또, 보험보상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며 통합보험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20) 기존의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외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추가하였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 보험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보험 실시

- '16.5월, 자치단체별로 계약하던 자원봉사보험을 일괄 통합계약으로 변경하였음
- '17.5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시스템(VMS)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분야 시스템(DOVOL), 평창조직위의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보험과도 연계시켜 분야별 통합 보험시스템을 구축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음.
 - 동 조항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원봉사시스템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하였음
 - 그러나, 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 조건 및 보장 내역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개별 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에 자치단체별 자원봉사 보험을 일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분야별(사회복지, 청소년 등) 보험과도 연계하여 통합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 또, 2017년에는 기존 12개 보장내역을 17개로 확대하였고 보험안내 및 청구, 통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편의성을 증가시켰음



3. 개선방안

-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자원봉사 보험의 통합작업으로 형평성, 효율성, 편의성 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독일 등의 해외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가의 경우, 자원봉사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재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개인이 주말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봉사 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²¹⁾
 - 산재보험과 자원봉사자 보험의 일반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음²²⁾
 - 자원봉사자 보험은 치료(요양)기간 중의 소득상실에 따른 일체의 소득보장 기능이 없지만, 산재보험은 치료(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또, 후유장애 또는 사망 시 보상이 일부 있지만, 일시 보상에 그치고 있어 산재보험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제도에 비해 사고 이후 전 생애기간에 걸친 생활보장 등이 충분하지 못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정재환	02) 788-456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	02) 2100-3760

21) 이승렬, 『자원봉사자의 재해 위험과 보호』(월간 노동리뷰 2013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p.83.

22) 김상호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연구보고서(수시) 2016-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58.



■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 중립 대책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만으로는 지부 조직에서의 개별적 선거운동이 전혀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국민운동단체 및 지부조직 등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간담회²³⁾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17.3월)
 - 단체별 각종 회의와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공직선거법」 준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중 단체별 특별 상황반 운영토록 하며 행자부와 국민운동단체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음

23)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개요〉

- 대상단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별도 추진계획
- 참석대상: 단체 사무총장, 본부장, 담당자 등 각 3명
- 협조사항: 제19대 대선 「공직선거법」 준수 협조, 선거기간 제한·금지사항 등 안내, 주요위반 및 처벌사례 안내를 통한 경각심 제고 등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운동 단체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협조사항 알림(3.17.)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협조사항 안내(3.20.)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명선거법 준수 재강조(4.20.)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명선거 준수 협조(재강조)(4.25.)
-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하였음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 간담회(3.31.)
-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통보시 관련단체에 전파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음
 -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통보(7.3.)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4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국민운동 단체가 「공직선거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국민운동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7건으로서 다른 선거 때(9건)와 비교하여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때(2건)와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적발 건수가 늘었고,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Ⅰ 국민운동 단체 「공직선거법」 위반(경고·고발) 현황 Ⅰ

구분	합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자유 총연맹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	9건	2건	4건	3건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2건	-	1건	1건
제6회 지방선거(2014년 6월)	9건	2건	4건	3건



구분	합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9건	3건	4건	2건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7건	3건	2건	1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정리

3. 개선방안

- 협조요청 공문 시행, 간담회 개최 등 계도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국민운동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 썩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 개선 의지가 부족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국민운동단체 행정자치부 보조금 지급 내역 Ⅰ

(단위: 백만원)

단체명	2015년	2016년	2017년
새마을운동중앙회	3,091	3,520	4,687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760	722	585
한국자유총연맹	582	500	250

자료: 행정자치부

- 또한, 각 단체들의 설립법²⁴⁾에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화하거나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제재방안 등을 적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정재환	02) 788-456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	02) 2100-3770

2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행정자치부	태극기 구입처 확대 등 국가상징물 관련 문제를 재정립하고, 애국가 예절 및 무궁화의 장점 등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며, 각종 의전행사 시 바른 활용을 권장·확산 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시 태극기 올바른 게양 및 관리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참석)에서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관리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음
 - 국가상징 홍보 배너를 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연계 실시하고,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부하며, 태극기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및 자치단체에 배부함으로써 태극기 게양·관리 매뉴얼로 활용토록 안내하는 동시에,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태극기 판매실태를 점검할 계획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각종 행사 시 태극기 올바른 게양 및 관리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관리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음
- 2017년 4월, 국가상징 홍보 배너²⁵⁾를 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음
-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를 2017년 8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임
- 태극기 안내 책자를 2017년 10월 중 중앙 및 자치단체에 배부할 계획임
-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태극기 판매실태와 전국 태극기 제작·판매업체 현황을 2017년 말까지 점검할 계획임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정부 부처에 국가상징 홍보 배너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처의 경우 협조가 부족해 보임
 - 17개 정부 부처의 국가상징 홍보 배너 설치를 조사(‘17.07.19. 현재)한 결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의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가 설치되지 않았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타 배너와 뒤섞여 게시되어 있어 쉽게 찾기 어려웠음
 - 국방부와 법무부의 경우, “국가상징 알아보기”라는 설명이 빠진 태극기 배너만 설치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짐
 - 태극기 판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한 판매실적 및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없는 등 기초 자료 확보 노력이 부족해 보임
 - 국가상징에 대한 정책이 교육·점검 위주의 단기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5)  국가상징 알아보기 홍보배너를 클릭하면 태극기, 애국가, 국화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이동함



3. 개선방안

-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하여 국가상징 배너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협조를 재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시군구 민원실 등의 태극기 판매실태를 점검하여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판매하고 있는 태극기 구입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태극기 및 애국가 등 국가상징물 자료 수집과 전시, 연구,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국가상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태극기의 날’, ‘무궁화의 날’, ‘애국가의 날’ 등 국가상징 기념일을 제정하여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됨
- 관습이나 대통령령 또는 법률 등 제각기 다른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상징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해 보임

표 1 우리나라 국가상징 법제 현황

국가상징	내용	근거
국기(國旗)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국가(國歌)	애국가	관습
국화(國花)	무궁화	관습
국새(國璽, 나라도장)	국새	「국새규정」 (대통령령)
국장(國章, 나라문장)	나라문장	「나라문장 규정」 (대통령령)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정재환	02) 788-4567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 2100-3072



■ 활성단층 조사 및 활성단층 지도 제작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활성단층 조사 및 활성단층 지도제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 지도의 제작을 추진할 것
국민안전처	서울을 지나는 두 개의 활동성단층(추가령단층, 왕숙청단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활성단층 및 내진설계 정량계수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연구자료가 나오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울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원전주변 등 단층조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부처공동(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단층조사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추진중('17.2.21~4.21)에 있음
 -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토대로 '17년부터 동남권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성단층 연구개발사업(R&D)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반도 단층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개발(1단계, '17~'21년)
 - 2단계('22~'26년), 3단계('27~'31년), 4단계('32~'36년), 5단계('37~'41년)
 -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09~'12년까지 추진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R&D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조사 수행 여부
 - 원전주변 등 단층조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부처공동(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단층조사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추진(이행)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지역을 우선적으로 1단계('17 ~ '21년) 활성단층 연구개발사업(R&D) 추진 중(이행 중)
 - 전라도 지역은 현재 1단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범부처 단층 조사 공동사업단에서 2단계 혹은 3단계 사업 등에 포함할 것으로 여겨짐(미이행)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 지도의 제작을 추진 여부
 - 각 단계별로 권역별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1단계('17 ~ '21년) 활성단층 연구개발사업(R&D)에서 동남권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할 예정임(이행 중)
- 활성단층 및 내진설계 정량계수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연구자료가 나오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울 것
 -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09 ~ '12년까지 추진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R&D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NDMI) 홈페이지에 공개(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제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도 다부처 공동 기획연구용역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활성단층 조사 및 지도제작을 위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하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제작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민안전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계에 따라 지역별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계수’를 고도화하여 내진설계 등 지진관련 주요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대로 된 활성단층 조사 및 활성단층지도 제작의 실시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프로젝트



- 트인 만큼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2014년까지 5단계 사업으로 25년에 걸쳐 총 1천 17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어,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	-	044) 205-5186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내진성능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감면 추진실적은 3년간 건수로는 5건, 감면 금액으로는 660만 원에 불과한 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민안전처	내진기준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등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등으로 제한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총별 기준 강화보다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로 두고 지진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9.12 지진을 계기로 추진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대책 시행
 - 내진율이 33%('15년 말 기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16.12.27)

구분	당초	변경
감면대상	○ 500㎡미만 1·2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 전체
감면비율	○ 신축 10% ○ 대수선 50%	○ 신축 50% ○ 대수선 100%
감면세목	○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내진성능 확보에 따라 지진보험료를 할인(기존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미대상 신규 건축물 내진설계시 30%)하여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 시행('17.1.20)
- 건축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표시 제도 시행('17.1.20)
-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율(10%) 완화 인센티브 시행('17.2.4)
- 내진성능확보 민간건축물 국세감면제도 시행('17.3.17)
- 건축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표시 제도 도입 추진('17년 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지방세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강구
 -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확대(이행)
 - 내진보강시 지진보험료 할인(이행)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표시 제도 시행(이행)
 - 내진보강시 용적율 완화(이행)
 - 내진성능확보 민간건축물 국세감면제도 시행(이행)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표시 제도 도입(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정부합동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예산과 제도적 제약 내에서 관련 후속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 감면 확대, 지진보험료 할인 등에 있어서는 그 혜택의 수준이 크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 확대 외에도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위한 국세감면 제도, 용적율 완화를 도입하였고,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표시 제도(시행), 내진성능표시 제도(추진 중)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 지방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비교적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경주 지진 이후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 국세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대책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부족함
-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내진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행 인센티브는 내진진단비용에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비롯하여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내진보강지원과 별도로 내진 진단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3(각 1/3)을 부담하고 있음²⁶⁾



-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	-	044) 205-5189

■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방안 검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내진기준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등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등으로 제한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층별 기준 강화보다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로 두고 지진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9.12 지진 시 비내진 저층 건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진의 무대상 확대를 통한 내진안전성 제고('17.2.4)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진설계 건축물 지방세 지원 방안』, 2011., p.59.



구분	당초	변경
의무 대상	3층이상 또는 500㎡ 이상	2층이상 또는 500㎡ 이상

- 건축구조기준에 칸막이 벽체, 유리 등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신설('16.5.30)
- 모든 주택과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물은 층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이외의 건축물은 2층 또는 200㎡이상으로 내진의무대상을 추가확대 추진('17년 말)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층별 기준 강화보다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로 두고 지진대책을 세우는 방안 검토**
 - 모든 주택과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물은 층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이외의 건축물은 2층 또는 200㎡이상으로 내진의무대상을 추가확대 추진(대안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한 내진 의무대상 확대의 내용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계획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개선된 내용인 주택,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층수, 면적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행해 나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등 최종검토 중에 있음
 - 정부는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문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내진설계 적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진설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접근(모든 건축물에 내진적



용, 건축물 및 지반의 특성 등에 따라 설계기준 차등적용)보다는 적용대상의 범위만 점차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처럼 층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제한하기 보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해당 건축물과 그 지반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용 측면에서도 신속시 내진설계하는 것이 건축 후 내진보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임
-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건축물 구조별, 규모별 적절한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정밀한 지진 위험도 조사를 통해 지진구역 등급도 현재 2단계(Ⅰ,Ⅱ)에서 세분화하고 등급에 맞는 내진성능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그동안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종전의 지반 분류에서 국내 지반조건에 맞는 지반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음
- 하지만 매립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반분류(지표면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인천, 부산 등 우리나라는 매립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해운대지역에는 매립지에 초고층 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이런 지역에 대한 지반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²⁷⁾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정책과	-	044) 205-5189

27) 김예성·배재현,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194호, 2016.10.28.



3개 통신망간 혼·간섭문제 대책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3개 통신망간 혼·간섭 문제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3개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간의 혼·간섭 문제가 있는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일 공동망 구축방안을 제안하였음에도 각각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중인데, 혼·간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혼·간섭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개부처(국민안전처, 해수부, 국토부, 미래부)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음
 - 통신망간 전파간섭 해소를 위한 대책(기지국 공유 방안)마련 및 합동시험 중
 - 3개 통신망 최종 합동 시험 및 가이드라인 마련(~'17.4월)할 예정임
 - 혼·간섭 대책 적정성 검토 및 무선국 허가(미래부, 5월~)를 받을 예정임
 - 이러한 결과를 공동 망설계·구축에 반영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4개 부처 협의체 운영 현황 및 협의 결과
 - 통합 공공망간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해 관련 4개 부처(국민안전처,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협의 추진('17.2.22~) 중(이행)
 - 협약체결(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간 '17.6.13.협약) (이행)
- 3개 통신망 최종 합동 시험결과 및 가이드라인
 - 시험 결과 공공망 간 커버리지 중첩구간에서는 기지국간 간섭으로 신호대 잡음비 저하되었으나 RAN Sharing 적용 후 안정적으로 통화권이 확보되었음(이행)
 - 공공망 간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통합 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결과”(17.6.13.)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 예정임(이행 중)
- 혼·간섭 대책 적정성 검토결과 및 무선국 허가 내용
 - 통합 공공망간 전파간섭 시험결과를 미래부에 제출('17.6.5.)하였으며, 현재 미래부에서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이행 중)
 - 기존 실용화 시험국(245개)을 일반 무선국으로 허가 신청(미래부, 6.15.) (이행 중)
- 공동 망 설계, 구축 반영 내용
 -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동 망 설계 및 본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예정임(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통신망 간 혼·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3개 통신망 합동 시험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통합 공공망간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17년 5월에 실시한 통합 공공망간 전파간섭 시험결과를 미래부에 제출('17.6.5.)하며, 현재 미래부에서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이므로 현 상황에서 전파간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리고 공공망 간 혼·간섭 문제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한 미래부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 된 후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므로 현재 해당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미래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공동 망 설계 및 본 사업 추진 시 반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또한 기재부(KDI)의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16.11월 ~ 현재까지 진행 중)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어야 본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02) 2100-0399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내실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3개 통신망간 혼·간섭 문제 대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상징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재난관리 민관협력 효율화 개선 방안 마련(’16.1.25.) 및 추진
 - 예방, 대응, 지원관련 재난분야 31개 민간단체 및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운영
 - ’17년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예산 1억 6백만 원 확보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상징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여부(이행)
 - 재난관리 민관협력 효율화 개선 방안 마련('16.1.25.) 및 추진(이행 중)
 - 예방, 대응, 지원관련 재난분야 31개 민간단체 및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운영(이행 중)
 - '17년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예산 106백만 원 확보(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민관협력 효율화 개선 방안 마련('16.1.25.)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인력 추가 및 예산확보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이전 봉사단체 중심의 중앙민관협력위원 구성을 재난유형별 대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추가해 나가고 있음(가축질병(대한수의사회), 대형화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6개 단체 신규추가)
 - 재난발생 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음
- 예산의 경우에도 시 '17년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예산 1억 6백만 원을 확보하였음

3. 개선방안

- 의무사항은 아니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포함하여 '시·도' 및 '시·군·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규정하고 있음(현재 17개 광역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16.10월)되었으며 시·군·구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음)
- 민관협력은 제도나 예산만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움. 민관협력위원회를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지 않고 민관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역량과 특성을 발휘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담당자에 대한 민관협력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민관협력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예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간전문가 현황, 시민사회의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시·군·구’ 단위에 까지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특수재난실	민관지원담당관	-	044) 205-6231

■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폭염 속에서 더욱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현황, 재난도우미 및 무더위쉼터 현황 재정비 추진
 - 2017년 범정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운영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지자체별 폭염 취약계층 DB화 및 재난도우미 활용 방문·전화 등 취약계층 건강 집중관리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폭염 속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부(이행)
 -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일제 조사 및 비상연락망 DB화 추진(이행)
 -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확인 및 교육(이행 중)
 - 폭염피해 현황 신속한 진파 및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운영(이행 중)
 -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예방 홍보 등 현장밀착형 대책 추진(이행 중)
 - 에어컨이 없는 시설은 지정 해제하는 등 쉼터 전수조사·재정비(42,912개소) (이행)
 - 민·관 협력을 통한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안전처는 폭염대비 취약계층 안전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2017년 범정부 폭염 대책’을 수립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재난도우미 파악 및 비상연락망 BD화,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확인 및 교육, 폭염대비 응급구급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재정비 등을 실시하여 폭염대비 취약계층 안전확보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부 무더위쉼터의 고장난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전기요금문제 또한 지자체별로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다만, 부족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무더위 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폭염대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각 부처별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관련 주요 현황들을 지자체, 소방서, 사회복지부서 등 재해약자 관련부서와 정보교환 등 사전협력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독거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인근 무더위 쉼터의 위치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	-	044) 205-5230

■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국민안전처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절차 때문으로 보이는 바,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CBS송출기능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할 것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기상청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긴급재난문자(CBS) 전파체계 정립
 - 지진관련 CBS전파 기상청으로 단일화 시행('16.11.21)
 -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기상청 발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7.1.17)
 - 지자체 발령권한 부여 방안 마련('17.1.30)
 - 9.12 지진 계기, 대응체계 개선 등 방재종합대책 마련('16.12.16)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진관련 CBS전파 기상청으로 단일화 여부(이행)
 -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기상청 발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17.1.17) (이행)
- 지자체 CBS발령권한 부여 여부(이행 중)
 - CBS 송출승인권한 시범 이양 기 실시(경기도/'17. 6. 1~) (이행 중)
 - 담당자 소집교육(5.29~30) 및 경기도 자체 운영지침 마련(7.1) (이행)
 - CBS 송출승인권한 전 시·도 확대 추진(7.14) (이행 중)
 - 시도 담당자 대상 소집교육 실시 및 상호합의서 교환(7.20) (이행)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숙달 모의훈련 실시 중(7.21~) (이행 중)
 - ※ 8.8일 부터 중앙상황실(상황부여) ↔ 시군구(문구작성 및 요청) ↔ 시도(승인) 연계 합동훈련 실시(이행 중)
 - 지자체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권한 이양('17. 8. 16) (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안전처는 지진 등 자연재난 관련 CBS 송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7.1.17) 하였음
- 또한 지적 자연재난 및 산불, 정전, 미세먼지 등 현장 상황판단 결과에 따라 국민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승인 없이 지자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CBS발령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의 CBS발송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제대로 발송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해 보이며,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CBS발송에 혼선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 그러나 CBS 발송과 관련하여 재난상황 발생이 아닌 기상특보(주의보/경보)의 경우에도 강제진동을 동반하는 재난문자를 통하여 발송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를 기상청이 아닌 국민안전처가 꼭 발송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상특보(주의보/경보)에 따른 CBS의 경우 재난상황에 대비한 예방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난발생상황이 아닌 일기예보이므로 큰 진동(혹은 벨소리)를 동반하는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내기 보다는 기상청에서 알람문자 정도로 보내거나, 국민안전처가 꼭 발송해야 한다면 재난위험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실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	044) 203-2810

인사혁신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 및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사혁신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민간근무휴직자 2016년 하반기 근무실태 점검('16.12)
 - 휴직자 하반기 수행 업무·근무실적·복무실태 등을 종합 점검·평가
-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개선 사항
 - 휴직자 보수 총액 1억 미만으로 제한
 - 소속 부처와의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연장 승인('16.12~'17.1)



- 2017.4.3. 현재, 10개 부처 14명 휴직 중
- 성과급 공직 재직 시 수령 가능한 금액으로 축소('17.2~3)
- 민간근무휴직자 보수 수령 내역 점검('17.3)
 - 휴직자가 약정 보수액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는지 점검
- 민간근무휴직자 복직 부서 점검
 - 민간근무휴직자 복직 부서와 휴직기업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점검(4월 완료)
- 민간근무휴직자 근무 실태 서면·현장 점검(4월, 8월, 진행중)
 - 휴직자 업무, 보수 등 처우 내역, 출퇴근·출장 현황 등 복무사항 전반에 대해 서면·현장 점검
- 민간근무휴직제도 제도 보완 지속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민간근무휴직자의 근무실태 점검(이행)
-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개선사항
 - 보수 총액 1억 미만으로(이행)
 - 소속부처와 업무유관성을 고려하여 연장승인(이행)
- 2017년 민간근무휴직자 근무실태 점검
 - 휴직자의 처우 내역, 출퇴근·출장 현황 등 복무사항 전반에 대해 서면·현장 점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도 민간근무휴직자의 근무실태 점검 및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 등은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2017년도 휴직자의 처우 내역 등 복무사항에 대한 점검은 2017년 8월까지 진행중인 관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2016년 민간근무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직위수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민간근무휴직을 통한 경험이 공직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직복귀시 보직임용과 관련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근무휴직제의 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휴직 대상기업 및 공무원 선발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된 절차진행을 위해 매년 특정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근무휴직 이용시 단순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이외에 민간근무휴직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사배치 계획 및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박영원	02) 788-4561
관련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	044) 201-8347



공무원의 전문성/생산성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생산성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전문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사혁신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분야·보직에 대하여는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 또는 전문직위(群)로 지정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17.2.11.)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전문 분야로 지정
 - 전문직공무원은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여 전문성을 축적·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직위 및 직위群 일제정비 및 확대 추진계획 시행('16.11월)
 - 핵심개혁과제·정책현안 중심의 직위지정 확대, 전문직위 일제정비를 통한 부적합 직위 조정을 통한 내실운영 기반마련 등
 -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공무원임용규칙」 개정 '17.4월)
 - 전문직위群내 전보완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 심화·확장 추진
- 일반 보직에 대하여는 강화된 필수보직기간('15.9) 이행력 확보를 통한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기여



- 인사혁신 수준진단 시 필수보직기간 준수현황 평가('17.1~2월)
 - 평가지표: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전년대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개선도
- 인사감사를 통한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현황 모니터링(계속)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음
 - 인사혁신 수준진단 시 필수보직기간 준수현황 평가('18.1월)
 - 전문직공무원 제도 성과분석('18.5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 및 시행(이행)
 - 전문직위 및 직위군 정비 및 확대(이행)
 - 전문직공무원 제도 성과분석(미이행)
- 필수보직기간 이행력 확보
 - 인사혁신 수준진단 시 필수보직기간 준수현황 평가 (2017년 이행, 2018년 이행 중)
 - 인사감사를 통한 필수보직기간 준수현황 모니터링(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전문직위 및 직위군 정비·확대 등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실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향후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는 전문성 확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다만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이외에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대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 전문직공무원이 도입된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통일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직위 발굴, 공정하고 투명한 전직시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 무엇보다 각 직무에 대한 직위분석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 직위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를 위해 인사혁신 처단의 지표 뿐만 아니라 기관평가의 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의 전문성/생산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과 동시에 ‘직무급제’의 도입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박영원	02) 788-4561
관련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044) 201-8312

■ 퇴직예정공무원의 지원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퇴직예정공무원 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인사혁신처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은퇴설계 프로그램 및 정보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사혁신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017년 퇴직준비교육을 확대·운영할 계획임('17. 2월~12월)
 - 전직설계과정: '16년 2,995명 → '17년 4,400명(46.9%↑)
 - 미래설계과정: '16년 11,071명 → '17년 12,863명(16.2%↑)
 - 2017년부터 전직설계 및 미래설계 교육 운영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일원화
- 2017년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17. 2월) 운영할('17. 3월~11월) 계획임
 -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전직을 실질적으로 지원
 - 퇴직 전·후 1년 이내 공무원 대상(400명 계획)
 - 재직 중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격무부서 근무자 지원 및 퇴직 후 집중도 있는 교육을 위해 지원대상을 퇴직 후 1년 이내까지 확대
-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무원의 행복한 미래설계」 개발하여('16. 12월), 운영하고('17. 2. 14 ~) 있음
 - 퇴직 후 사회적응과 사회참여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에 온라인 강의 신설, 86개 기관 107개 교육운영부서에서 공동활용
- 공무원 퇴직지원 체계화 계획 마련 및 단계별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17.4~12월)
 - 민간 전문업체 선정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 추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퇴직준비교육의 확대·운영

- 전직설계과정 4,400명 교육(이행 중)
- 미래설계과정 12,863명 교육(이행 중)
- 전직지원 컨설팅 계획 수립과 운영(이행)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행)
- 단계별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퇴직예정공무원과 관련하여 전직설계, 미래설계 등 다양한 콘텐츠와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행 중인 단계별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원효과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퇴직준비교육을 통한 재취업 관련 정보(재취업기관, 업무, 보수수준 등)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퇴직예정공무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퇴직공무원의 활동지원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2017년 7월 현재, 공무원 인사 관련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퇴직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
 - 민간퇴직자의 활동은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¹⁾에 의해 지원받고 있음
- 따라서, 퇴직예정공무원, 퇴직공무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운영중인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퇴직공무원지원센터는 노후생활 상담에서부터 교육·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까지

1) 법적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며,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 현행 콘텐츠별 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60세 이전, 60세~70세, 70세 이후 등)지원체계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박영원	02) 788-4561
관련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044) 201-8420

■ 공무원 해외출장 사후관리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공무원 해외출장 사후 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인사혁신처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부처가 많지 않은 등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이 있으므로,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인사혁신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출장 관리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였음('16.12.22.)
 -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기준 강화 및 출장계획 이행 사항 명문화
 - 국외출장대상자 사전 교육 실시 및 서약서 작성



- 국외출장보고서 표절여부, 내용 등 점검 강화
- 출장보고서 시스템 등록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음('17.3.20.)
 - 출장자는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 각 기관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기관별 국외출장 보고서 우수성과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할 계획임('17.12월)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출장관리 강화를 위한 법규 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이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행)
- 국외출장보고서 우수성과자 포상계획(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출장관리 강화와 관련된 법규개정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현실적으로 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서약서 작성이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실제 출장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표준서식 및 반드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관미팅 사진 등의 첨부 등 출장보고서의 질(質)을 강화하는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출장보고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장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 출장보고서 표준서식 및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첨부 기재 등의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장목적, 방문기관, 방문일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면담사항 등 표준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출장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 출장보고서의 경우 인사혁신처 또는 기관의 임의선정이 아닌 1년동안 실제 국외출장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공무원의 조회 수, 조회의견 등이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외출장의 적절성(특정공무원, 특정지역, 특정방문기관 등의 중복성 검색)을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박영원	02) 788-4561
관련 부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	044) 201-8436

경찰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해외 공관 경찰 주재관 배치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하여 해외 공관 경찰 주재관 배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경찰청	해외 공관의 경찰 주재관 배치에 있어, 범죄유형 및 발생 건수를 감안해서 경찰 주재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찰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경찰주재관은 사건사고 발생 건수, 재외국민 數, 테러·강력범죄 발생 빈도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음
 - 또한, 국제적 관심사건 발생 등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세부 정원을 재조정함
 - 최근 ‘경찰주재관 정원’ 재배치 사례
 - ’15년 2월 駐라오스대사관(독일 본 → 라오스) 파견



'17년 1월 駐멕시코대사관(예멘 → 멕시코) 직제화

○ 6개 공관에 경찰주재관 추가파견 협의

- 외교부·행자부와 협의, 사건사고·체류교민·여행객 등 치안수요 급증 공관에 경찰 주재관 신규파견 필요성 검토 중

▣ 6개 공관 사건사고 등 현황('14~'16년) ▣

(단위: 건, 명)

구분	사건사고	체류교민	여행객
駐시엠립(분)	36	8,445	380,000
駐대만(표)	281	9,309	800,000
駐다렌(출)	107	44,400	1,480,000
駐미얀마(대)	71	3,106	65,000
駐니가타(총)	41	7,739	3,000
駐터키(대)	11	1,485	230,000

자료: 경찰청

- 경찰주재관 증원 지속 추진, 사건사고·테러·재난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함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 공관의 경찰 주재관 배치에 있어, 범죄유형 및 발생 건수를 감안해서 경찰 주재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여부
 - 범죄유형 및 발생 건수를 감안한 주재관 배치 개선안(계획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경찰주재관은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마약·테러 등 국제성 범죄 관련 자료 수집,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31개국 51개 공관에 57명의 경찰 주재관이 파견 중임

▣ 경찰 주재관 지역별 파견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구주	아프리카·중동
국가	31	13	2	5	6	5
공관	51	27	7	5	7	5
인원	57	33	7	5	7	5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나 생활안전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 경찰 주재관 파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6개 공관에 경찰주재관 신규파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임
 -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음
 - 해외 공관의 실질적인 주관 부처는 외교부이고, 조직·인력의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라 경찰청의 역할이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임
- 한편, 사건사고 피해가 빈번하나 경찰주재관이 없는 오스트리아, 체코, 美 샌프란시스코 및 스위스 공관에 경찰주재관을 우선적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음
 - '16년 사건사고 피해다발지역 : 오스트리아(230명), 체코(195명), 美 샌프란시스코(156명), 스위스(142명)
 - 특히 현재 북·동유럽 공관에는 경찰주재관이 전무(全無)한 실정으로, 세계 각 지역별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에 주재관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노성준	02) 788-4564
관련 부처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	044) 3150-0398



■ 경찰관 정신질환 치료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하여 경찰관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경찰청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전경고대상자로 분류된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민원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찰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경찰관의 스트레스 예방부터 전문치료까지 수준별 지원 체계 구축
 - (경미 증상자 관리) 정신적 외상경험, 불안·우울·수면 등 경미한 심리적 고통 호소 직원 대상,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전문 상담·치료 상시 지원
 - (중증 증상자 관리) 중증 직원 대상 전문치료 지원 및 전환배치·업무조정 등 인사 조치로 회복기회 제공
 - (치유 인프라 확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센터 2개소 신설
 - ※ 기존 4개소(서울·부산·광주·대전) → '17년 6개소(상반기 2개소 신설 : 경찰병원·경기남부)
 - 연차적으로 마음건강센터를 지방청별 1개소씩(18개소*) 지속 확대 등 체계적인 회복·지원 강화
 - * 서울 2개(경찰병원 포함), 기타 16개(지방청 각 1개)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전경고대상자로 분류된 경찰관이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민원부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
 - 중증 직원 대상 전문치료 지원 및 전환배치·업무조정 등 인사 조치 (확인 불가)
- 체계적인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마음건강센터 확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증 직원 대상 전문치료 지원 및 전환배치·업무조정 등 인사 조치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파악할 수 없어 ‘중증 직원’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중증 직원이 전문치료를 지원받은 현황도 파악이 안 된다는 입장임
- 한편, 경찰청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Ⅱ 마음건강센터 현황 Ⅱ

구분	내 용
목적	경찰은 직무특성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해당 트라우마는 전문적 진단·치료가 필요하나 기존의 일반적인 심리상담으로는 미흡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운영
운영현황	기존센터 4개소(서울보라매병원·부산온종합병원·광주조선대병원·대전유성선병원) + 신규 2개소(경찰병원, 경기남부 아주대학병원)
운영방식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센터 내 검사·상담 후 정신과 연계
이용현황	'14년 5,648명(4,564회), '15년 1,981명(4,515회), '16년 1,729명(3,191회)
상담인력	센터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이상) 각 1명씩 상주
대상·횟수	경찰관 및 검사관, 이용횟수 제한 없이 전액 무료지원

자료: 경찰청



- 마음건강센터는 신설 추진 중인 2개소를 포함하여도 전국 6개소에 불과한 바,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마음건강센터가 없는 곳의 경찰관은 원거리에 따른 불편¹⁾ 및 상담소와 병원의 분리에 따른 체계적·지속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마음건강센터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 별로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노성준	02) 788-4564
관련 부처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	-	044) 3150-0264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

1) 민간 상담소 이용자 중 심층치료 필요 시 인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지원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찰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교육부와 함께 각 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 대책*」 수립('16.7월)

* ① 역할 재정립 ②警·學 협업 강화 ③ 선발·배치 ④ 전문성·인성 제고 교육이 있음

- 역할 재정립의 경우, 경찰 고유 영역인 '폭력 예방·대응' 사안에 집중, 일반상담 업무(학교부적응 등)는 교육당국·전문기관에 인계함

- 협업 강화는 경찰·교육당국 間 '상설협의체' 운영, 상호 정보공유 강화, 공동 매뉴얼 제작('16. 9월) 등 공동 대응임

- 선발·배치의 경우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하고, 여경 확대 배치, 여학생 개인 면담은 여경이 수행함

〈내부선발〉 교육이수·자격증소지 여부를 자격요건화(化)함

〈신규채용〉 아동·청소년·심리·상담·교육분야 전문가를 경력경쟁채용함

- 전문성·인성 교육은 경찰교육원 교육기간 확대(1주→2주), 전문기관 온라인 강의 수강, 관계부처 합동교육* 등임

* 학교폭력 사안처리(교육부), 성인자·면담기법(여가부)

○ 제도개선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점검으로 제도 내실화 추진

※ '17. 3월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시행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역할 재정립

- 경찰 고유 영역인 '폭력 예방·대응' 사안에 집중, 일반상담 업무(학교부적응 등)는 교육당국·전문기관에 인계(이행 중)

■ 협업 강화

- 경찰·교육당국 間 '상설협의체' 운영 상호 정보공유 강화, 공동 매뉴얼 제작(2016.9.) 등 공동 대응(이행 중)

■ 선발·배치

- 가급적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 여경 확대 배치 여학생 개인 면담은 여경이 수행(이행 중)



■ 전문성·인성 교육

- 경찰교육원 교육기간 확대(1주→2주), 전문기관 온라인 강의 수강, 관계부처 합동교육 등(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경찰과 교육 당국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조치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선발배치와 전문성·인성 교육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전북 부안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실태 조사를 실명으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²⁾이 있었던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배치와 전문성·인성 교육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³⁾
- 한편,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가 10.7개교 수준으로 전담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인력의 확충도 제도개선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 현황(2016년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원	1,092	169	48	44	46	32	25	22	146	51	59	47	67	75	75	82	90	14

주: 정원 1,138명, 1인당 10.7개교 담당

자료: 경찰청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노성준	02) 788-4564
관련 부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대책과	-	044) 3150-1319 044) 3150-0920

2) TV조선, 「성추행조사를 실명으로, 학생들 불안」, 2017.6.27.

3)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부안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주관하였고, 설문지 상의 성명 등 기입은 임의사항이었다고 설명함



■ 전방 신호등 설치 관련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하여 전방 신호등의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및 차량통행속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전방 신호등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경찰청은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차량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경우 운전자의 신호 인지가 늦어져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에 따라, 유럽과 같이 정지선 부근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 경찰은 전문기관(한양대,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을 통하여 전방신호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08년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정함
 - 개정 후부터 전방 신호등을 원칙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개정 전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은 도로관리청 예산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중임
 - 매뉴얼에 따른 전방신호등 설치 강조 지시 하달('16.12월)
 -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른 전방신호등 설치 강조 지시('16.12.29, 교통운영-2788)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 확대 지속 추진할 예정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방 신호등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도로관리청 예산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중(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등의 설치 의무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유료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자⁴⁾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전방 신호등의 교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경찰청이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강조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의 설치 확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체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통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⁵⁾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호등 설치 업무를 간접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별 교통 신호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노성준	02) 788-4564
관련 부처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	044) 3150-0610

4)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소방관 공기호흡기 관리 개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소방관 공기호흡기 관리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국민안전처	소방관 공기호흡기 점검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조정('16.10월)하여 중점사업에 공기충전기 구입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6.11.17)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17.2.1)
 - 전문기관 공기 품질검사 강화 및 공기충전기 관리기준 정비 등



- 공기충전기 교체 추진(연중)
 - 충전기 통합관리에 따라 노후 충전기 전량 교체(43대, 15억7천만 원)
-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영 점검('17.11월)
 - '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시·도의 집중관리 유도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소방관 공기호흡기 관리문제 개선 여부(이행 중)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6.11.17) (이행)
 - 공기 충전기 통합 관리·운영(이행 중)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및 공기충전실 확충(이행 중)
 -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이행 중)
 - 평가제도 도입(이행) 및 인사지원 확대(지자체에 권고)
 - 공기호흡기 규격 개선 및 충전기 필터 품질 강화(사전검토 중)
 -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기준(이행) 및 공기 품질기준 강화(검토 중)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및 용기 관리기준 개선(이행)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안전처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16.11.17)하였으며, 전문기관 공기 품질검사 강화 및 공기충전기 관리기준 정비 등을 포함하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17.2.1)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운영중인 공기 충전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공기충전기 안전시설(안전충전함, 충전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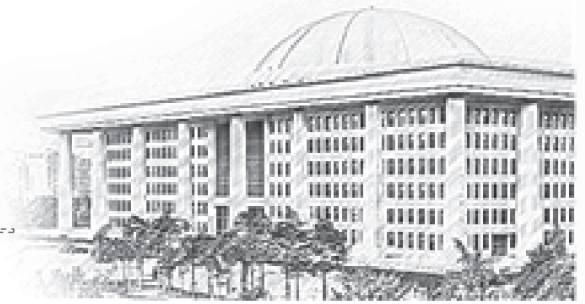


- 다만 해당 부분은 시설 및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완전히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임
- 소방안전본부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 중 인가지원 확대 부분(시·도별 격무·기피부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포함)은 권고사항에 해당하긴 하지만, 시·도별로 업무환경이 다를 수 있으며 공기호흡기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그리고 공기호흡기 충전기 필터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기준 강화, 공기호흡기 공기품질기준 강화(해외 선진기준 수준으로 강화)에 있어서는 호흡기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하여 현재 사전 검토 중으로 현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배재현	02) 788-4563
관련 부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	-	044) 205-73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유권해석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앙선관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관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임에 비하여, 법원의 판결은 증거법칙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내리는 법적 판단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확대 채용, 중앙선관위에 법규안내센터 설치, 직원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법규 운용능력 경시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규 운용의 정확성·전문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채용 확대, 법규안내센터 설치, 직원교육 등 역량 강화, 법규 운용 경시대회 개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실행 여부(이행 중)
-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채용 확대, 법규안내센터 설치, 외부 자문 등 해석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은 ‘정확성 부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해법도 강구되어야 함

3.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간 유권해석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 또는 지역선관위에서 공표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유권해석의 통일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02) 788-4534
관련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과	-	02) 503-2190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효성 제고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시 너무 많은 항목의 개정의견을 한 번에 제출하기보다 우리의 사회적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우선순위를 정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관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해당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왔음
 - 향후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고양된 국민의 정치의식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시 입법 우선순위 설정 여부(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개정의견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개정의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임
 - 선거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정의견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의 우선순위 설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선순위 설정 외에는 별다른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개정의견 작성시 관련 학회나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순위 선정의 사유를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민생에 직결되는 개정이라든가, 정치구조 및 사회변혁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정이라든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개정의견 작성시 중앙선관위 내부검토는 물론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세미나, 토론회를 거쳐 내용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02) 788-4534
관련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02) 765-2391



■ 거소투표 부정행위 억제방안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위의 거소투표 부정행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앙선거위	거소투표 시 선관위 기표도우미나 시설 직원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거위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수용·보호시설 관계자 및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신고·대리투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에 기표소 설치와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조사 후 투표용지를 미발송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문 안내교육 실시 여부(이행 중)
- 정당후보자 대상 교육 강화 여부(이행 중)
- 허위신고자 및 대리투표 의심자에 대한 투표용지 미발송 및 고발조치 여부(이행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내교육 및 전수조사 등의 조치는 거소투표시 기표도우미나 시설 직원들에 의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함. 보다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부정행위 억제방안으로 거소투표신고서 제출시 거소투표자와 기표도우미에게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투표한다는 일종의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정투표에 따른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본인확인서약서 방식은 현재 캐나다가 우편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안임
- 특히, 기표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거소신고인 10인 이하의 기관·시설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02) 788-4534
관련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법제과	-	02) 503-2190



■ 후보자 대상 선거관련 교육 확대 및 강화



1.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대상 선거관련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관련 교육을 확대·강화할 것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입후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후보자 등 정당·선거관계자 대상 안내·교육,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정당의 요구와 여성·청년·다문화 등 직능별 특성을 반영한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및 ‘당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예비정치인 대상 정치아카데미 운영 확대, 공직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중심의 선거아카데미 강화, 정당 의견을 반영한 선거관련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및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입후보설명회 등 안내교육,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및 당원연수 실시 여부(계획 수립 중)



- 예비정치인 대상 정치아카데미 운영 확대, 정치관계법 선거아카데미 강화, 정당 의견 반영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육 확대 여부(계획 수립 중)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 운영, 정당사무처 간부 및 당원 대상 연수 등 다양한 교육 강화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가 선거준비과정이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의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과 선관위 전문가 사이에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질의와 답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학자와 정치학자 등 다양한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	02) 788-4534
관련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법제과	-	02) 503-2190

집필자 명단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팀 장	심정희	4540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입법조사관	백상준	4544
	입법조사관	박지영	4547
	입법조사관	박혜림	4542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통일부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이승현	4555
	입법조사관	이승열	4557
	입법조사관	김예경	4551
〈국방위원회 소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팀 장	유웅조	4550
	입법조사관	형혁규	4553
	입법조사관	김도희	455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 장	이상팔	4560
	입법조사관	박영원	4561
	입법조사관	김현정	4566
	입법조사관	하혜영	4562
	입법조사관	노성준	4564
	입법조사관	배재현	4563
	입법조사관	류영아	4565
	입법조사관	김종갑	4534
	입법조사관보	정재환	4567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팀 장	정지은	4570
	입법조사관	김민창	4571
	입법조사관	김재환	4575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국제원산지정보원	입법조사관	정도영	4574
	입법조사관	임언선	4572
	입법조사관	김영찬	4573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보	박인환	4578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팀 장	임동춘	4580
	입법조사관	최정배	4581
	입법조사관	원종현	4583
	입법조사관	기준하	4584
	입법조사관	김창호	4582
	입법조사관	강지원	4587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	김성봉	4554
	입법조사관보	김애진	4586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마사회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배민식	4593
	입법조사관	유제범	4588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입법조사관보	김태우	459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팀 장	김봉주	4590
	입법조사관	전은경	4596
	입법조사관	유재국	4594
	입법조사관	구본근	4598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팀 장	유인규	4600
	입법조사관	김예성	4605
	입법조사관	장경석	4601
	입법조사관	김진수	4603
	입법조사관	박준환	4602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분 야	직 위	성 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조사관보	박인숙	46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팀 장	유의정	4700
	입법조사관	이덕난	4702
	입법조사관	정환규	4701
	입법조사관	정태희	4703
	입법조사관	조인식	4705
	입법조사관	임주현	4707
	입법조사관	김휘정	4704
	입법조사관보	유지연	470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개발원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서창식	4726
	입법조사관	조속희	4727
	입법조사관	김주경	4725
	입법조사관	최병근	4721
	입법조사관	서선영	4722
	입법조사관	박선권	4724
	입법조사관보	김대명	4728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팀 장	이만우	4720
	입법조사관	조주은	4723
〈환경노동위원회소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 직무대리	최준영	4731
	입법조사관	김경민	4732
	입법조사관	전형진	4734
	입법조사관	한인상	4733
	입법조사관	이혜경	4737
	입법조사관보	이동영	4736
	팀장	박규찬	4530
편집	입법조사관보	김유정	4537
	행정실무원	김안나	4530
	입법조사원	방우리	4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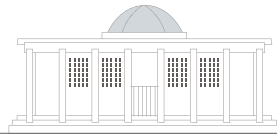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I

발 간 일 | 2017년 8월 31일
발 행 | 이 내 영
편 집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485-14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